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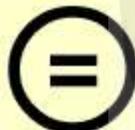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개선방안

- 제주지역 초·중학교 교직원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일반행정 전공

양 영 순

2007년 8월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개선방안

- 제주지역 초·중학교 교직원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남 진 열

양 영 순

이 논문을 행정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8월

양영순의 행정학과 일반행정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년 8월

<국문초록>

이 연구는 시행 12년째를 맞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실태에 대한 학교공동체 구성원 중 교직원의 인식을 조사·분석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었으며,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선출 실태, 기능 및 운영 실태, 운영상의 평가에 대한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설문조사는 제주 지역 초·중학교 교사, 보직교사, 일반직원 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최종 분석에 사용한 설문지는 회수된 329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9부를 제외한 320부이며,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 분석과 카이제곱(X^2)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선출 면에 있어서는 정수등록으로 무투표당선 선출이 되고 있어서 운영위원들의 입후보 의사가 저조한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면에 있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항목 중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대해서 낮게 평가되었으며, 안전 심의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대부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서의 문제점으로는 운영위원의 전문성 결여를 가장 높게 꼽았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상의 평가 면에 있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결과 교육효과 제고 부분이 낮게 평가되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학교 업무의 효율성 저하가 높게 나타났고, 학부모회 등의 대표가 운영위원을 겸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찬성하였다. 또한 지급을 요하는 안전에 대한 서면심의 제도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참여에 대하여는 현행 규정대로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참관시키는 데에 대하여 45.3%가 찬성하고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직원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에 대해서도 대부분 찬성하였다. 회의 참석 수당 등이 법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필요하다는 응답도 43.4%인 것으로 나타나 회의 참석 수당 지급에 대하여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학교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인식 제고, 운영위원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확대 순으로 나타났다.

위 분석 결과에 나타난 교직원들의 인식과 관련 조례 등을 바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이 올바른 방향으로 활성화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과 선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운영위원들의 참여를 증대시켜 나아가야 한다.

둘째,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에 대한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전문가인 교과협의회 등의 교사그룹에 맡기도록 하는 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의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학교의 예산·결산소위원회, 교육과정소위원회, 급식소위원회 등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넷째, 학부모회 등의 대표가 운영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지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 서면심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학교운영위원회에 일반직원과 학생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운영위원들의 회의 참석에 대한 보상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지급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

여섯째, 학교운영위원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인식 제고와 더불어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가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운영위원이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하였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위원 자격을 상실토록 하는 의무조항을 두는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임기 개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에 대해서도 학교 실정에 따라 정기회 또는 임시회로 구분·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차 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문제	3
제3절 연구의 제한점	3
제2장 이론적 배경	4
제1절 교육자치와 학교단위책임경영	4
제2절 우리나라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8
제3절 외국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실태와 시사점	19
제4절 선행연구의 고찰	27
제3장 연구방법	36
제1절 연구모형	36
제2절 조사대상	38
제3절 조사 도구 및 내용	39
제4절 자료의 처리방법	41
제4장 연구결과 분석	42
제1절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선출에 대한 분석	42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및 운영에 대한 분석	52
제3절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상의 평가에 대한 분석	70
제5장 결과분석 요약 및 개선방안	81
제1절 결과분석 요약	81
제2절 개선방안	86
제6장 결론	90
<참고문헌>	93
<Abstract>	96
<부록 : 설문지>	99

<표 차례>

<표2-1> 학교운영위원회의 연혁	10
<표2-2> 학교운영위원회의 법률 구조	11
<표2-3> 학교운영위원의 구성 비율	12
<표2-4> 주요국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비교	24
<표2-5> 연도별 선행연구 자료	35
<표3-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38
<표3-2> 설문조사 영역별 문항 내용	40
<표4-1> 학교운영위원 정수에 대한 의견	42
<표4-2> 학교운영위원 정수에 대한 의견(분포차이)	43
<표4-3> 학교운영위원회 구성비율에 대한 의견	43
<표4-4> 교원위원 선출방법	44
<표4-5> 교원위원 선출방법의 적절성	45
<표4-6> 교원위원 선출방법의 적절성(분포차이)	45
<표4-7> 당연직 교원위원에 학교장의 참여에 대한 의견	46
<표4-8> 당연직 교원위원에 학교장의 참여에 대한 의견(분포차이)	47
<표4-9> 학부모위원 선출방법	47
<표4-10> 학부모위원 선출방법의 적절성	48
<표4-11> 학부모위원 선출방법(분포차이)	48
<표4-12> 지역위원 선출방법	49
<표4-13> 지역위원 선출방법의 적절성	50
<표4-14> 지역위원 선출방법의 적절성(분포차이)	50
<표4-15> 교원위원·학부모위원 선출의 문제점	51
<표4-16>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개정 의 심의기능의 필요성	52
<표4-17>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개정 의 심의기능의 필요성(분포차이)	53
<표4-18> 학교 예·결산의 심의기능의 필요성	53
<표4-19> 학교 예·결산의 심의기능의 필요성(분포차이)	54

<표4-20>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의 심의기능의 필요성	55
<표4-21>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의 심의기능의 필요성(분포차이)	55
<표4-22>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의 심의기능의 필요성	56
<표4-23>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의 심의기능의 필요성(분포차이)	56
<표4-24> 방과후·방학중의 교육 및 수련활동의 심의기능의 필요성	57
<표4-25> 방과후·방학중의 교육, 수련활동 심의기능의 필요성(분포차이)	57
<표4-26>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의 심의기능의 필요성	58
<표4-2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의 심의기능의 필요성(분포차이)	58
<표4-28>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기능의 필요성	59
<표4-29>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청원사항의 심의기능의 필요성	60
<표4-30>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의 심의기능의 필요성	60
<표4-3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의 심의기능의 필요성(분포차이)	61
<표4-32> 교복 및 체육복 선정의 심의기능의 필요성	61
<표4-33> 교복 및 체육복 선정의 심의기능의 필요성(분포차이)	62
<표4-34>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의 심의기능의 필요성	62
<표4-35>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의 심의기능의 필요성(분포차이)	63
<표4-36> 학부모 및 일반인 대상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설치·운영의 심의기능의 필요성	64
<표4-37> 학부모 및 일반인 대상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설치·운영의 심의기능의 필요성(분포차이)	64
<표4-38>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기능의 적절성	65
<표4-39>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개최 횟수의 적절성	65
<표4-40>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성	66
<표4-41>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성(분포차이)	67
<표4-42>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필요성	67
<표4-43>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필요성(분포차이)	68
<표4-44> 청원사항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논의정도에 대한 의견	69
<표4-45>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문제점	69

<표4-46> 단위학교 교육자치 활성화 성과 평가	70
<표4-47>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실시 성과 평가	71
<표4-48> 교육효과 제고에 대한 성과 평가	71
<표4-49> 학부모들의 학교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 성과 평가	72
<표4-50> 학교행정의 공개적 운영에 대한 성과 평가	73
<표4-51> 학교행정의 민주성 확립에 대한 성과 평가	74
<표4-52> 교육자와 학부모간 신뢰 확립에 대한 성과 평가	74
<표4-53>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역 교육문제 해결정도에 대한 평가	75
<표4-54>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 자생기관 간 유대관계 형성에 대한 평가	76
<표4-55>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로 인한 문제점	76
<표4-56> 학부모 등의 대표의 운영위원 겸임 필요성	77
<표4-57> 지급 등의 심의안건에 대한 서면심의 방안 필요성	77
<표4-58>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에 대한 의견	78
<표4-59>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에 대한 의견(분포차이)	79
<표4-60> 학교운영위원의 회의참석수당 지급규정 마련 필요성	79
<표4-61> 행정실 일반직원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필요성	80
<표4-62>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우선적 해결과제	80

<그림 차례>

[그림 3-1] 분석모형	36
---------------------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화·정보화·개방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교육기관은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우수한 인적자원의 양성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에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1994년 대통령 자문기구로 발족된 교육개혁위원회는 5.31 교육개혁안을 발표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였다. 5.31 교육개혁안은 새로운 문명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21세기의 주역들을 길러내기 위하여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분권화, 민주화, 다양화 추세에 맞추어 다양한 목표들을 제시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가 자율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학교 운영체제로 전환함으로써 학부모, 교원 및 지역사회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1995년 9월부터 시범 운영된 후 1996년까지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시·지역 이상의 국·공립학교에서부터 실시되어 읍·면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었으며, 1999년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2001년 3월 1일부터는 모든 사립학교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제도적 목적은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 구현과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교직원·학부모·지역사회 인사 등이 자발적으로 책임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공동체를 구축하며,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다(김성열, 2001 : 김경은, 2005. 재인용).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운영과 구성 주체이면서 그동안 의사결정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왔던 교사나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 인사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학교운영이 원래의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되느냐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학교운영위원들의 인식과 참여 여하에 달려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시행 12년째를 맞이하는 동안

학교운영에 자율화와 민주화의 흐름을 가져왔고, 교육자치의 소중한 가치를 확인해 주는 한편, 교육행정의 합리화와 투명화를 가져오게 된 계기를 마련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학교현장에서는 참여의식과 민주훈련 부족, 전문성과 대표성 부족, 상호신뢰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많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나타나고 있다.

현실적으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토의·토론 문화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운영위원회와 교무회의, 학부모회의 등과 같은 단위학교의 다른 의사결정기구들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마찰이 있으며, 단위학교 구성 주체들이 단위학교 의사결정체제의 재구조화에 맞는 자신들의 역할과 의식, 관행의 변화 방향에 대하여 혼란을 겪고 있다(임종철, 2001 : 김경은, 2005. 재인용).

따라서 무엇보다 학교현장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라는 공동체의 이해관련자인 학부모, 지역사회, 교직원 등이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학교는 지역사회가 어떠한 인재를 원하는가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학부모와 지역사회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직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현안 문제들을 같이 해결하며, 교직원은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요구하고 원하는 교육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해야 한다. 도입 초기의 시행과정에서 규정의 적용과 실행과정에서의 시행착오는 물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제도든 빠른 기간 내에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면서 우리 실정에 알맞은 제도로 가꾸어 가야 할 것이다(곽문복, 2004).

또한 1996년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구체적인 확립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제시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첫째, 학교경영에 대한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의 참여 확대를 위한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 개발과 학교-지역사회 유대 강화, 둘째,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 교사의 참여 확대를 통한 학교 조직 정비, 셋째,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와 제도 마련 등이다.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육관계자와 교육당사자, 학부모, 지역사회가 각각의 목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조정과 타협을 통하여 학교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상호 협력해야 한다. 특히 교육의 핵심주체 중 하나인 학교 교직원

들의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심이 없이는 정상적인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을 보장할 수 없기에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교직원들의 인식을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선출 실태, 기능 및 운영 실태, 운영상의 평가에 대하여 학교공동체 구성원 중 교직원들의 인식이 어떠한지 또한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제2절 연구의 문제

이 연구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학교 공동체 구성원 중 교직원의 인식을 조사·분석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으며,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의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선출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실태는 어떠한가?

셋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상의 평가는 어떠한가?

제3절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대상은 제주도 관내 초·중학교로 한정하였으므로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 2) 연구방법으로 설문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의 인식을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의 근거로 제시하는 데에는 지역의 특성과 환경적 요소에 따라 한계가 있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교육자치와 학교단위책임경영

1. 교육자치

헌법 제31조¹⁾에 따르면 교육자치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구와 제도로 명시되어 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과 각 시·도 조례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구체적인 교육자치제에 따른 기구와 시책을 수립·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자치제의 원리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김종철(1985)은 교육자치제의 기본원리로 ①지방분권의 원리, ②자주성 존중의 원리, ③적합성 확립의 원리, ④전문성의 원리를 제시하고, 김윤태(1985)와 남정걸(1988)은 김종철(1985)의 견해와 같이 하면서 적합성의 원리 대신 주민통제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김영철(1987)은 교육자치에서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하면서 특히 적도분권을 강조한다(황영해, 2001, 재인용).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자치제 설명자료는 교육자치제의 기본원리로 ①지방분권의 원리, ②주민참여의 원리, ③교육행정 독립의 원리, ④자주적 재정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으며(김태완, 1989),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1989)에서는 교육자치의 원리로 ①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의 원리, ②지방분권의 원리, ③주민통제의 원리, ④전문성의 원리, ⑤단위학교의 민주적 운영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위에 열거한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교육자치의 원리를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황영해, 2001),

첫째, 분권화의 원리이다.

분권화의 원리는 종적분권과 횡적분권으로 나누어진다. 종적분권은 지방분권의 원리이다. 지방자치가 행정단위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한 장치이듯이 교육에 있어서도 교육행정이 지방분권화되어 지역적 특수성과 학교현장의 특수성

1) 헌법 제31조 제4항 :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을 고려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의 교육행정 기능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되어야 하며, 이러한 지방분권을 통해서만 중앙집권의 최대 결함인 관료성과 획일적 통제를 극복할 수 있다. 다음으로 횡적 분권의 원리이다. 교육자치가 올바르게 실현되려면 자치의 각 단위에서 수평적 분권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횡적분권의 실현이 없는 종적분권은 교육자치 단위 내부에서 일정한 형태로 교육행정의 집중화를 가져온다. 시·도 단위, 학교 단위에서 수평적 분권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위학교의 교육자치 실현은 형식적으로 적용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둘째, 전문화의 원리이다.

교육활동의 본질과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교육자치제는 교육활동의 전문성과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학식과 덕망이 있거나 교육관계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능한 행정가라면 누구라도 교육행정을 할 수 있다는 통념을 깨고, 교육조직의 특수성과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며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데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기술을 갖춘 인사가 교육행정을 맡아야 한다. 단위학교의 운영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다. 학교단위 교육자치 시행에 있어서 반드시 뒤따라야 할 부분은 교육에 관한 의사결정과 관리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단위학교를 경영함에 있어서도 교장 한 사람의 임의적 결정으로는 교사,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 특히 교수-학습활동에 관련되는 의사결정에는 학생의 요구와 교사들의 전문성에 기반을 두어야 함은 중요하다. 따라서 학교 수준의 교육자치 실현에 있어서 전문화의 원리는 매우 강조된다.

셋째, 민주화의 원리이다.

민주주의는 사회발전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근본이 된다. 특히 교육자치제 하에서 자치의 각 단위는 구성원들의 참여를 조장하고, 진정한 자치정신에 입각하여 구성 주체들의 합리적 참여를 확대·보장하여야 한다. 교사,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학교운영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그 양은 물론 질의 수준을 높여야 하는데 의사결정 참여의 질을 높이는 것은 단기간에 되는 일이 아니다. 학교경영자가 학교운영에 대하여 변혁지향적 지도력과 인내를 갖고 민주적으로 꾸준히 운영할 때 가능한 일이다. 또한 참여를 희망하는 각 집단의 구성원들이

거리낌 없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위원 선출 등 구성과정에서부터 민주적이어야 하고, 운영에 있어서도 개방적이어야 하며 민주적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결국 단위학교의 민주적 운영의 원리가 교육자치의 모든 원리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이 교육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 단위학교 수준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참여 기회가 많아질 때 교육자치는 확대·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박종렬(1995)은 학교자치가 필요한 이유로 교육의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 중 교사의 변인이 미치는 영향이 미약한 것을 합리화할 수 있으며, 학교 자치구조가 적절하게 조직되어 있지 않고, 학교경영 조직 구성원의 자율 결정능력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신태균, 2000, 재인용).

단위학교 교육자치가 필요한 이유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구성원인 학생·교사·학부모·지역사회 인사의 학교운영 참여 의식을 높일 수 있고, 교원의 전문성과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협동적 체제를 이루어 감으로써 학교의 자율역량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2. 학교단위책임경영제

전통적 학교경영은 학교 자체가 중앙의 엄격한 통제로 특징지어진 외부통제 경영에서 비롯되어 학교의 경영과업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시 하에서 수행되었고, 종종 학교 특성과 요구가 일치하지 않았으며 학교 구성원의 자율성과 권한 위임이 크게 제한되었다. 즉, 기존의 학교 경영은 외부 통제적이었고, 그 특성은 교육목표의 통일성, 단순하고 거의 정적인 교육환경과 교육개혁의 소극적 자세 그리고 표준화와 안정지향적이었다(오승현, 2003).

이에 반해 학교단위책임경영제는 교육의 수혜자와 교육담당자들이 학교운영과 교육에 대해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기초로 하여 단위학교가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조직관리, 인사, 재정,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자율권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며,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학교경영체를 의미한다(교육부, 1996).

주삼환(1992), 박종렬(1996), 유현숙(1995), 진동섭(1995), 정태범(1995), 최희선

(1995), 김성렬(1995) 등의 국내 학자들과 Clive Dimmock(1993), Caldwell and Spinks(1988) 등의 외국 학자들이 정의한 학교단위책임경영제에 대하여 박종렬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권영주, 1998, 재인용)

학교단위책임경영제에서는 자원의 배분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학교 수준에서 의미 있고 끊임없는 분권화가 필요하다. 자원이란 지식, 기술, 권력, 자료, 사람, 시간 및 재정을 포함하는 것이고, 분권화는 조직 구성원들의 전문적인 분화에 따라 적절하게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리고 학교단위책임경영은 학교의 정책이나 의사결정의 과정에 교직원과 학부모 및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할 때에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의사결정이 교장이나 교감 개인적이 아닌 이해 관계자들의 집단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하고, 학생들의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요구와 교사들의 전문성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학교단위책임경영제는 결국 정책적으로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안으로서 보다 많은 의사결정이 행정기관보다는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불러일으키는 노력으로서 비전문가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반영하려는 시도이고, 인사와 교육과정에 관한 기본적인 의사결정 단위로서 학교에 비중 있는 책무성을 부여하려는 의도이다. 그리고 교육과정과 재정에 대한 권한의 단위학교로의 이양, 자율적 결정, 학교경영 성과에 대한 활동의 증대로 학교 수준의 권위 있는 분권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오승현, 2003).

따라서 학교단위책임경영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교육의 수혜자와 교육담당자들이 학교의 각종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실행·평가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 또한 중앙집권체제에 익숙한 학교경영체제의 수동성, 타율성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교원인사에 대한 학교경영자의 의견이 보다 존중되고, 학교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며, 학교장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김선모, 2003).

제2절 우리나라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교육개혁위원회(1995)는 5·31 교육개혁안에서 초·중등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육수요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학교를 자율적으로 경영함으로써 학교마다 특성이 드러나고 교육의 효율성을 최대한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개혁위원회가 학교공동체라는 개념 제시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그리고 학교공동체가 원하는 교육자(교장 및 교사)를 초빙하여 ‘좋은 우리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인 「교장 및 교사 초빙제」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학교단위책임경영체가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다(박종필, 2004 : 이강식, 2006, 재인용).

여기에서는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단위책임경영체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 배경과 과정, 그리고 운영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 배경 및 과정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선진적 수준으로만 제기되었던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 논의가 본격화되고, 그 구체적 방안이 현실화되기 시작하였다.

1995년 당시 교육부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중등 교육의 자율화와 다양화를 추진하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교육행정을 혁신하기 위하여 학교장 중심의 학교단위책임경영체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보고에 의하면, 학교장 중심의 학교단위책임경영체는 창의적인 학교 운영과 학교별 특성화가 가능하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은 기본정책 수립·조정 및 지원기능만을 담당하고, 교육과정 운영·학사 운영·교육내용의 구성과 평가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학교장에게 부여한 것이다(이강식, 2006).

우리의 학교행정과 운영에 획기적인 방향 전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 배경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신태균, 2000),

첫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교원·학부모·지역 인사가 참여하여 학교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동안 학교 운영에 대한 책임이 교육행정기관이나 학교장에게만 있다고 생각해 온 경향이 있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라는 공동체의 당사자인 교원·학부모·지역사회 인사가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학교 발전을 위하여 학교장은 학교 운영의 총책임자로서 미래 지향적이고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며, 교사는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입장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자로서 그 소임을 다해야 하고,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만이 아닌 우리 자녀의 교육권을 올바르게 행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 인사는 지역사회의 변화와 요구를 교육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는 보다 발전적인 학교 운영을 위한 것이고, 학교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각 부분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학교는 급변하는 사회·문화·경제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사회의 여타 조직에서는 운영의 자율화·다양화·전문화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으나 학교는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는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학교 운영’을 내세우며 기존의 획일적이고 규제 위주의 교육행정을 제도적으로 개혁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체제는 교육서비스의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나 의견이 학교 운영에 제대로 반영될 통로가 없었으며 철저하게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는 공급자 위주로 획일화된 교육체제를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체제로 바꾸려는 교육개혁 방안에 따라 교육자치의 기본단위로 출범하였던 것이다(교육부, 2000).

학교운영위원회의 연혁을 살펴보면 <표 2-1>과 같다.

<표2-1> 학교운영위원회의 연혁

일 자	추 진 내 용
1995. 5. 31	5.31 교육개혁 방안 중 하나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을 대통령에게 건의
1995. 8. 4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 마련
1995. 2학기	학교운영위원회 시범학교 운영 : 355개교 (초 177개교, 중 117개교, 고 61개교)
1996. 2. 2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시 지역은 1996. 4. 30까지, 읍·면 지역은 1998. 4. 30까지 국·공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1997. 12. 12	「초·중등교육법」을 제정하여 법적 설치근거 변경 -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자치기구이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초·중등교육법으로 근거 변경 - 국·공립의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 설치 의무화, 사학은 설치 자율
1998. 2. 24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 규정
1999. 8. 31	초·중등교육법 개정(2001. 3. 1. 시행)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국·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필수적 자문기구)
2000. 2. 2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00. 3. 1. 시행) - 학생수 기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 3단계 구분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관한 사항 등

▶ 자료: 교육부(2000).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 II.

2.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교원·학부모·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 결정에 민주성·합리성·효과성을 확보하며,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

기 위한 단위학교 차원의 집단 의사결정기구이며, 학교장과는 독립된 기구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법률 구조는 <표 2-2>와 같다.

<표2-2> 학교운영위원회의 법률 구조

관련 근거	명 시 내 용
초·중등교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사립의 초·중·고·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근거 - 학교운영위원 결격사유 -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원칙 - 위원의 선출 방법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 시정명령 근거 - 조례 등의 위임 근거 - 학교발전기금 조성 방법·사용범위 등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및 사립학교 정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의 자격 및 임기 - 임기 개시일 -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방법 등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각급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의 수 - 자생조직과의 관계 - 소위원회의 운영방법·절차 -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 자료 : 제주도교육청(2005). 알기 쉬운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1)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선출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교육행정기관의 인사, 교육전문가, 동문대표, 기업인 등)의 고른 참여로 구성하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 15,664호. '98. 2. 24) 제58조에 규정되어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수는 5-15인²⁾ 이내의 범위 안에서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하

2) 초·중등교육법(1999.8.31) 제31조 제3항 :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 당해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학생수가 200명 미만의 학교의 경우 5~8명, 200명 이상 1천명 미만의 경우는 9~12명, 1천명 이상인 경우는 13~15명을 두고 있으며, 운영위원별 구성 비율은 <표 2-3>과 같다(교육부, 2000).

<표2-3> 학교운영위원의 구성 비율

구 분	일반 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학부모위원	40%~50%	30%~40%
교원위원	30%~40%	20%~30%
지역위원	10%~30%	30%~50%

※ 실업계 고등학교 지역위원의 경우 1/2 이상은 사업자로 구성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각 시·도 조례 또는 정관 및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위원 선출 시 구체적인 사항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정해지지 않아 학교 구성원 간에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단위학교에서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원 선출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명시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조직의 성패는 그 구성원의 면면과 역량에 의해 좌우되며, 학교운영위원회도 그 점에서 예외일 수 없다. 따라서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책임자를 선출하는 과정은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위원장과 부위원장 순으로 선출과정을 살펴본다(교육부, 2000).

가) 학부모위원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직접선출 방법은 직접투표, 서신 또는 우편투표, 직접투표·서신·우편투표의 병행 등 3가지 방법이 있다. 이 중에서 학교 사정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직접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시

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그러나 단서조항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사유만으로는 간접선출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는 시행령에 직접선출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교원위원

교원위원은 교직원의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 학교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는 당해 학교 교원의 대표자이다. 특히 교원위원은 개인이나 집단이익의 대변자가 아니라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교직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에 반영하고,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교직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연결고리의 위치에 있다. 학교의 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며, 기타 교원위원은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따라 그 선출방법이 상이하다. 국·공립학교는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고, 사립학교는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따라서 교원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학교운영 전체를 보는 안목과 균형 감각이 자질로써 검토되어야 한다.

다) 지역위원

지역위원은 학교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교육적 수요와 정보를 학교에 전달하고, 학교 교육목표의 성취를 위해 다른 위원들과 함께 노력하며, 나아가 학교가 지역사회의 교육·문화활동의 센터로 자리잡힐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을 연계하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지역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학교에 대한 관심과 이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식견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선출하게 된다.

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인을 두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교원위원이 아닌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선출 절차는 각 시·도의 조례에 위임되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과 기능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교원·학부모·지역 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 교육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집단 의사결정기구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정위원회’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법률, 시행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법률, 시행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는 ‘독립된 위원회’이다.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지만 학교운영위원의 일원으로 참가하는 것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적 성격상 학교장과 독립된 기구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면에 있어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국·공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제 32조³⁾에 규정된 심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 ①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②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③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 ④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⑤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⑥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3)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 국공립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제1호~제12호)

- ⑦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⑧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⑨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⑩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⑪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⑫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사립학교의 장은 위의 제6호를 제외한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117호, 2006. 10. 18) 제9조 심의사항⁴⁾은 다음과 같다.

- ①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 ②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수련, 야영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③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 ④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⑤ 학부모·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청원사항
- ⑥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이 중에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원사항은 위원 1인 이상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3)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가) 회의소집 및 회의 운영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 소집 시기는

4)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 운영위원회는 법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제1호~제6호)

위원회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된 임시회는 학교장이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는데,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며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상정된 안건의 심의에 있어서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회의는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안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그 활동 상황을 전체 회의에 보고하고, 위원장은 매 학년도 말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학부모와 관할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나) 회의 원칙

회의를 통하여 심의결정이 이루어지므로 회의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회의원칙이 준수되어야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 절차의 일반적인 원칙으로는 다수결의 원칙, 일사부재의의 원칙, 정족수의 원칙, 회기계속의 원칙, 회의공개의 원칙 등이 있다. 정족수에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있으며 의결정족수에는 일반 의결정족수와 특별 의결정족수가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일반 안건의 의결정족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일반 정족수를 택하고 있다.

다) 학교운영위원의 권한과 임무

첫째,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학교운영 참여권). 즉 운영위원들은 교원·학부모·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

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들의 참여는 개인적 지위에서가 아니라 각 분야의 대표라는 공적 지위에 근거한 것이므로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운영위원들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권한이 있다(중요사안 심의·자문권). 운영위원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에 대하여 질의, 논의 및 표결을 행하는 과정을 통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취지를 실현한다.

셋째,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보고 요구권).

넷째,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가 있다(회의참여의 의무). 회의소집 통보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자격이 상실된다.

다섯째, 운영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된다(지위 남용 금지의 의무). 학교운영위원직은 무보수 봉사직이다. 따라서 운영위원으로서 활동하는 대가로 반대급부의 성격을 띤 보수나 수당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3.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1)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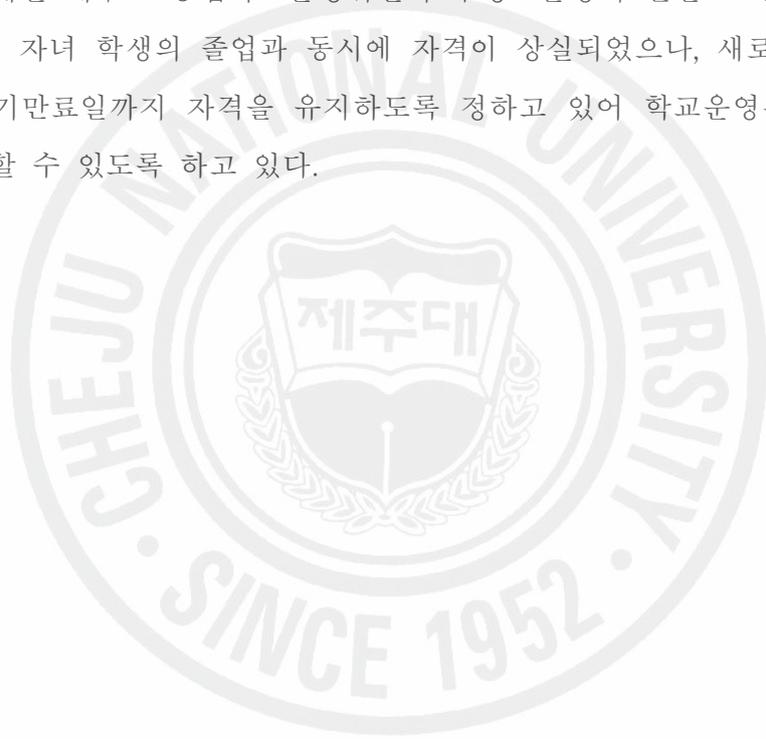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06년 10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117호로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목적은 제정 전과 마찬가지로 초·중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에 두고 있다.

2) 주요 내용

조례의 주요 내용은 운영위원회에 대한 사항, 즉 선출을 비롯하여 임기, 자격, 의무, 자격상실과 위원장·부위원장에 관한 사항들을 정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능과 운영위원회와의 관련한 회의소집, 의사 및 정족수, 발언권, 회의록 작성과 안건처리, 소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3) 종전의 조례와 달라진 내용

종전 조례인 제주도 공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자격이 상실되었으나, 새로 제정된 조례에서는 임기만료일까지 자격을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3절 외국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실태와 시사점

미국을 비롯한 선진 각국에서 국가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육개혁 프로그램 중 학교단위책임경영제는 우리나라 교육개혁의 핵심이 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외국의 학교운영위원회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학교단위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해 각국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자치기구로서의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그 유사형태를 살펴봄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성 확보와 구성원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얻고, 태동기를 지나 정착기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요국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측면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⁵⁾

1. 미국의 학교운영위원회

미국은 1980년대에 들어서서 경쟁국들의 도전을 받아 세계 최강국으로서의 지위가 흔들리고 생산성과 무역 및 재정 위기가 도래하면서 국가적 위기의식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국가적 위기를 교육의 강화를 통해 극복하려는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로 교육개혁이 추진되었다.

1991년 부시 정부는 21세기를 향한 교육개혁안인 “미국 2000 : 교육 전략 (America 2000 : An Education strategy)”를 발표하여 학교교육의 책무성 강화와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확대, 유능한 교원의 확보 등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학교자치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은 교육구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적인 윤곽이 대동소이하므로 워싱턴 주 소재의 교육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인 학교장(당연직 위원), 정규교사 이외에 임시교사를 포함한 교원위원, 행정직원과 고용원도 참여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참여가 보장되고 있으며, 학부모위원, 학교 후원기업 대표 등의 지역인사위원, 학생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정수는 교육자치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략적으로 12~16명인 경우가 많다.

5) 제3절 외국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실태와 시사점은 박승중(2006)의 논문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음.

상임위원(당연직 위원)인 학교장은 본인의 지원이나 동료 교직원들의 지명에 의하여 후보가 된다. 교원위원 또한 본인의 지원이나 동료 교직원들의 지명에 의하여 후보가 되는데, 후보자 지명은 6월부터 시작되고 9월에 실시되는 전체교사 또는 전체 교직원의 총선거에서 교원위원이 선출된다.

학부모위원회는 본인의 지원이나 다른 학부모가 추천한 후보자 중 9월 총선거에서 학부모들의 투표에 의하거나 학교에 설치된 별도의 선정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선출된다. 지역위원은 관심 있는 지역사회 주민들 중에서 학교장이 임의로 2명을 선정하고, 교육감이 1명을 지명한다. 학생위원도 교직원위원이나 학부모위원과 마찬가지로 9월에 총선거를 통해 선출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의장과 부의장 각 1인 및 간사 1인을 선정한다. 위원 중 누구라도 임원에 선임될 수 있으나 학교장은 예외로 한다.

특별한 임무를 위해 위원회 안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데 최소 1인의 운영위원이 포함되어야 하고 학부모나 지역주민 누구에게나 참여가 개방된다.

미국에서 학부모가 학교운영이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으로는 학부모 자문회(PAC : Parent Advisory Council), 학부모-교사 협의회(PTA : Parent-teacher Association), 학교 후원회(BC : Booster Club) 등이 있다. 운영위원회의 기능으로는 학교장의 채용, 교사·임시교사·사무직원·고용원의 채용, 학교예산 및 학교 목표 설정과 학생 생활지도 방침에 대한 결정 등이 있다.

2. 영국의 학교운영위원회

영국의 학교운영위원회는 1902년 및 1944년 교육법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다. 1986년 교육법에 의해 위원들은 교육과정, 성교육, 학교시설물 관리 등과 관련된 특별한 의무를 갖게 되었고, 학부모에게 연례보고서를 송부하는 의무도 갖게 되었다. 1994년 1월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인체가 됨으로써 위원회의 활동이나 결정은 위원 개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전체, 즉 법인에 귀속하게 되었다.

영국의 학교관리 기관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School Governing Body)와 학교장이 있는데 단위학교의 실질적인 운영권은 학교운영위원회가 갖고 있다. 교육법

에서는 각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게 하여 이 위원회로 하여금 인사와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경영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은 학교장, 교사, 직원, 학부모, 지역교육청 인사 및 이들이 임명한 인사, 사업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인사 등 다양한 선출위원 또는 임명위원들로 이루어진다. 또한 회의를 주선하고 의사진행, 법적인 자문을 해주는 서기가 있다. 위원의 수는 학교규모(학생수)에 따라 9~19명이며,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서 상임위원이 되고 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권리를 갖는다. 교원위원은 교사들에 의해 선출되며 재선출도 가능하다. 교원위원은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 자동적으로 위원직도 상실되지만, 학부모위원은 임기 중 그 학교의 학부모 자격을 상실하여도 잔여 임기 동안 위원직이 유지되나 원하는 경우에는 사임할 수도 있다.

지역교육청 임명위원은 언제든지 교육청에 의해 해임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 선출위원은 학부모의원, 교원위원, 교육청 임명위원의 2/3가 참석한 회의에서 다수결로 선출된다. 이 위원들 중에는 산업체 대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모든 위원의 임기는 4년이다.

매학기 첫 회의 시 위원들은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단, 학교에 고용된 위원은 의장이 될 수 없다. 의장은 교장과 함께 직면한 학교 현안문제를 공동 대처하는 실질적인 지원 인사가 된다. 특히 의장은 학생, 학부모, 임원들이 교육활동에 해를 끼치는 정책을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영국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은 교육과정의 심의 및 지원, 예산관리, 교직원들의 임명·관리·해고, 정보의 제공, 학교안내 책자 및 연간 보고서 발간, 장학검사 등이 있다.

3. 독일의 학교협의회

독일에서는 교장이나 교감도 법적으로는 교사와 동일한 신분이라는 특징을 가지며, 단위학교 자치경영의 3대 중심축으로 학교협의회, 교사협의회(Lehrerkonferenz), 학부모협의회를 설치하여 공동책임 및 협력을 촉진하는 학교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학교법은 학교운영과정에 있어서 상호협력이 요구되는 ‘학교장’의 임무, ‘교사협의회’의 임무, ‘학교협의회’의 임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학교협의회는 최소한 14명 이상의 교사가 있는 모든 학교에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은 7학년부터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은 물론 학년이 올라 갈수록 학부모 대표의 수가 줄고 학생 대표의 수를 증대시켜 참여적 의사결정체제의 본질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은 구성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학교장은 학교협의회 의장이 되고 학부모협의회 의장은 의장대리가 된다. 학교협회에는 교사 대표 6명, 학부모 대표 2명, 학생 대표 3명이 참여한다. 다만 학생회가 없는 경우 학생 대표 없이 학부모 대표 5명만이 참석하며, 학부모협의회가 없으면 일반 학부모 대표 6명이 참여하게 된다.

교사, 학생, 학부모 대표의 비율은 주에 따라 다른데 대략 6명~36명으로 구성된다. 학교협회에는 각 학급 학부모와 교사의 모임인 학급운영회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학교후원회의 대표들이 학부모 대표로 참가한다. 또 학급후원회는 학부모 모임의 가장 기초가 되는 조직으로서 학급의 모든 학부모와 그 학급에서 정기적으로 수업하는 교사로 구성된다. 학급후원회 회장은 학부모 가운데서 선출되며, 부회장은 학급 담임이 맡는다.

학교협회의 기능으로는 기숙사 규칙의 제정, 학교협회에 관한 학교의 결정, 학급사항과 숙제에 관한 결정, 학교의 규정과 행정 규정의 일관성 있는 실행·결정,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의 확보·설치, 시설 및 그 사용 청구, 학교 이름의 부여, 학생 진급에 관한 문제 처리, 소풍·도보여행·수련회·산업시찰·박물관 견학 등의 행사와 동호인 활동 등에 대한 협의·토의 등이 있다.

4. 프랑스의 학교운영위원회

프랑스는 단일국가의 형태를 취하면서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교육행정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였기 때문에 1968년 5월 혁명 이후에야 비로소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가 시작되었다. 프랑스에서 학부모의 행동은 엄격하게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다. 법률에 규정된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는 본질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를 선출하고 학급회의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등학교에서는 몇몇 교육활동에 관하여 간섭할 수 없음이 첨부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학부모의 참여는 학교운영위원회와 사친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 프랑스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친회는 학부모연합회와 공교육학부모회 등이 있다. 프랑스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행정담당자, 교사, 학부모 대표뿐만 아니라 지역 대표, 유명인사, 학생 대표, 기술·서비스 담당 학교직원 등으로 구성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세 개 영역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영역은 학교행정가, 학교와 관련 있는 단체 조직원(예를 들면 시청직원, 일반 기업인), 지역 대표자로 구성되고, 두 번째 영역은 학교 교원 및 교의, 보건교사, 사서와 같은 비교원 대표로 구성되며, 세 번째 영역은 학생과 학부모 대표로 구성되고 있는데, 이들 영역은 각각 총구성원의 1/3씩을 이루고 있다.

학생수가 600명이 넘는 중학교의 경우 전체 위원의 수는 30명인데, 그 가운데 학부모 대표 7명, 학생 대표는 3명이다. 이에 비해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부모 대표 5명, 학생 대표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교의 수준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높아질수록 학부모 대표의 수는 줄고 학생 대표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지역에서 선출된 자는 시 또는 공공단체를 대표하며, 지역 대표자가 한 명뿐인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역 장학사가 학교장의 추천을 얻은 자를 임명해야 한다. 그리고 교원 대표, 학생 대표, 학부모 대표는 선거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위원회는 적어도 1년에 3번 이상 열리고, 학교장은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회의일자와 시간은 학부모의 회의 참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국가수준의 결정사항에 대해 토의하는데 이 때 교사·학부모·학생 모두가 학습활동의 방향을 숙지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비판하고 개정작업을 추진하거나 연대투쟁을 벌일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매 학기 또는 필요한 경우마다 점검하며, 마지막 학기에는 진로지도 를 하는데 최종 결정은 학부모가 하고 학교운영위원회는 가장 적절한 제안을 한다. 주요국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비교내용은 <표 2-4>와 같다.

<표2-4> 주요국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비교

국가	구성 인원	구 성 원	교장 위치	학 생 참 여	기 타
미국	12~16명	교장, 교사(임시교사 포함), 교직원(사무직원, 고용원 포함), 학생, 지역사회인사, 학교후원 기업대표 등	상임 위원	지역별로 허용	교육감이 지역대표 인사 중 1인 지명, 위원임기 1년
영국	9~19명	학부모, 지역교육청 피임명자, 교사, 위원선출자, 교장	상임 위원	18세이상 가능하나 실제적으로 불가능	서기고용(법적 자문, 회의주선), 위원의 임기 4년
독일	6~36명	교장, 교사 학생, 학부모	위원장	학년이 올라 갈수록 학생 대표 수 증가	학교설립자(사립)가 심의권과 제안권을 가지고 참여
프랑스	24~30명	지역대표, 학교행정담당, 유명인사, 학부모, 교사, 교직원, 학생	위원장	학년이 올라 갈수록 학생 대표 수 증가	학급위원회가 중추적 역할(상향식 의사결정체제)

이상에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의 제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앞에서 소개한 주요 선진국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실태와 우리나라의 운영실태를 비교하여 보면, 소개된 국가 중 영국을 제외한 미국, 독일, 프랑스의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학생을 포함시키고 있음은 물론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비교결과를 기초로 할 때 학생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시키지 않고 있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영국의 제도와 대체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국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의사, 기업가, 지방교육청 행정실무자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점이 우리나라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학생 참여를 보장하는 점과 다양한 주체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점 등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부분을 제외하고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목적과 성격, 그리고 운영상에서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외국의 학교운영위원회 사례의 시사점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미국을 비롯한 선진 지구촌 국가들이 교육의 질적 수월성 증대가 국가경쟁력 강화의 지름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자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주요 전략의 하나로써 교육개혁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대의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모델을 기초로 하면서 우리 실정을 고려한 교육개혁안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선진국의 교육개혁 프로그램 중 학교단위책임경영제는 우리나라 교육개혁의 핵심이 되고 있으며,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경영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도입하여 1996년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다. 교육개혁과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시행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앞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사례에서 우리나라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개혁의 방향을 단위학교의 ‘자율적 경영’과 ‘책임성의 강화’에 두었다는 점이다. 학교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의지에서 학교장에게 학교경영의 권한을 부여하고 그 경영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고, 교직원과 학부모, 그리고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 조직을 통해 학교경영이 단위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맥을 같이하여 이에 중점을 두어 시행해 나아가고 있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을 다양하게 참여시킴으로써 구성원들의 참여 활성화와 전문성 신장을 기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학교장과 교사,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뿐만 아니라 일반직원과 학생들도 중요한 구성원이 되고 있다. 특히 영국은 의사, 기업가, 농부, 은행관계자, 화가, 지방교육청 행정실무자를, 프랑스는 학급 카운슬러 또는 진학지도 교사,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육문제를 다 함께 풀어가려는 교육공동체 구현의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셋째, 미국과 독일, 프랑스에서는 수요자인 학생의 권리를 인정하여 학생들에

게 학교운영위원회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의 대표수를 증가시켜 참여적 의사결정체제 본질을 구현하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입시 위주의 교육구조인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이 전문성을 확보하기란 어려운 현실이므로 심의권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참관이나 진술권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넷째, 미국, 영국,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교사뿐만 아니라 행정직원을 포함하여 교직원 전체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식은 우리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사례를 통해 의사결정과정에서 행정적 절차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 도출되지 않도록 학교의 행정실무 담당자들을 참여시켜서 자문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은 시급히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영국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지역위원의 경우 사업가(산업체 대표)를 반드시 참여시키되 선출한 위원들에 의해 해임되지 않음으로써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교육재정의 자립도가 낮은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사회 자본가 또는 동창회장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시킴으로써 사회에서 얻는 이윤 환원과 더불어 학교운영 활성화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여섯째, 미국의 학교운영위원회는 각 학교의 특성에 맞게 학교 급별로 다양한 형태의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프랑스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내의 다른 조직들, 예를 들면 학급운영위원회, 교사협의회, 학부모회 등의 조직과 유기적인 연계성을 두고 분담 또는 상호지원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를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성공적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 학교의 특성에 맞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갖추고 학교 내의 학부모회, 어머니회, 교사협의회 등과 상호지원 체제가 이루어지는 학교공동체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제4절 선행연구의 고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다룬 여러 선행이론들 가운데 본 연구와 관련 있는 이론의 내용들을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2000년 이전과 2001년 이후로 나누어 검토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시대별 구분

1) 2000년도 이전

염철인(1996)은 공립 초·중·고등학교 20개교의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임의 표집해 조사 분석한 결과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의 법규 내용에 대해서는 교원과 학부모가 잘 모르는 편으로 특히 일반 학부모의 인지도가 낮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선출에 대한 홍보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둘째,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에 대해서는 현재의 심의 기능에 가장 많은 반응을 보였으며 셋째,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에 대해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고 교원과 학부모 90% 이상의 참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현(1997)은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실태분석’에서 구성, 운영, 기능적 측면에서 접근한 결과 구성면에서는 학부모위원의 선출방식이 추대 등에 의한 비율이 높은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고, 운영면에서는 회의 참석 횟수가 너무 적었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실질적 지도력 발휘자는 학교장이라는 인식이 많아 결과적으로 교육수요자가 소외되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기능면에서는 교장과 학부모들은 심의기능과 자문기능으로 만족하고 있는 반면 교원위원들과 지역위원들은 의결기능을 바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정현웅(1997)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본취지, 구성, 기능, 운영에 있어서 제도적인 면과 운영면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추진되어야 하고, 학교별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단위학교의 자율에 맡기며, 현재 학교에서 비법정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를 법정기구화 할 필요

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학부모와 지역위원들에게 계속적이고 광범위한 연수를 실시하여 전문적인 소양과 자질을 향상시켜 중앙집권적 행정기관의 통제에서 벗어나 학교의 자율과 학교공동체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윤임규(1998)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교원위원들의 견해 분석을 실시하여 나타난 결론으로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교사의 관심과 참여도 및 활성화 정도가 낮았으며, 교원위원 후보자 선정 및 선출은 대체적으로 민주적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학부모 및 지역위원 선출은 학교장이 개입하여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둘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은 학부모 부담경비에 관한 것이었고, 학사일정의 창의적 운영이나 교육내용의 개선 등은 거의 협의되고 있지 않았으며, 특히 학교장 초빙제, 교과서의 선정, 예산 및 결산의 심의 등 운영위원의 권익향상에 관련된 사항들의 처리를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 등을 들었다.

권영주(1998)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단위 교육자치기구로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사·학부모 및 일반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하며, 운영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들이 갖는 피해의식을 없애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함이 필요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위원회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책무성 및 자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곽영희(1999)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그동안 국가주도적, 권위적인 학교교육의 통제구조를 민주적, 자율적 통제구조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지만,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까지 기여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따라서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첫째, 운영위원 선출은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책자들을 발간·보급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켜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민주적 방식에 의한 선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학교운영위원들의 회의운영과 절차에 대한 부족한 지식을 보완하고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연수 기회를 확대하며, 이론과 강의 위주의 연수 방식에서 탈피하여 사례 발표, 토론, 질의응답 등의 다양하고 실용성 있

는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신태균(2000)은 학교운영위원회 실태 현황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한 설문 분석을 바탕으로 제시된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적극적·개방적 자세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며, 학부모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소위원회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수요자인 학생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셋째, 운영위원의 연수를 강화하여 전문성 있는 심의능력이 배양될 수 있는 전문 연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김기각(2000)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첫째, 학교운영위원의 선출에 대해서는 보직교사와 경력이 많은 교사들이 위원선출 방법과 과정에 대하여 민주적이라고 보았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비율에 있어서 교원의 비율을 상향조정할 것을 바라고 있었으며, 위원장의 선출 방식에 대하여는 현행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교권침해를 우려하고 있었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후에 근무여건에는 변화가 있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2) 2001년도 이후

엄기복(2001)은 학교운영위원회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 첫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서 운영위원의 선출은 충분한 시간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한 대표성을 지닌 자질이 우수한 운영위원을 선출하여야 하고 둘째, 교육활동의 최종 수혜자인 학생 대표가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여야 학교운영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셋째,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학교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 교무회의 등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교사와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았다. 넷째, 교사들의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할 사항은 교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학교 내의 '교과협의회'와 같은 소위

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학교장, 교사 및 학부모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황영해(2001)는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 결과 제시하는 사항으로 첫째, 학부모들에게 학교운영위원회의 설립취지 및 목적, 기대효과 등에 대한 연수 기회 확대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둘째, 교육의 실질적 수요자인 학생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차원에서 학생의견 반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셋째, 학교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과 회의 절차가 복잡한 것을 개선하고 시간적 낭비와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업무추진의 효율화를 기해야 한다고 보았다.

마영숙(2002)은 ‘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분석’에서 대구·경북지역 국·공립 중학교 10개교 교사와 학부모 1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구성측면에서 학부모와 지역 인사의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하고, 학부모의 적극적 참여가 크게 요구되며 학교장의 권위적 태도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조직측면에서는 운영위원장 및 간부 선출의 민주화, 운영위원 중 교사 비중 증대, 교사의 권한 확대가 요구되며, 운영측면에서는 교육청 등 관련기관의 간섭 축소,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다양한 의견 수렴, 심의된 사항의 철저한 이행 등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오승현(2003)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적 방향에 대한 제시 내용으로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는 교사의 법령 인식을 높이고 당연직 교원위원을 교장에서 교감으로 확대 선출하는 것은 보류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둘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에 관해서는 심의의 합리적 절차성을 전반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보았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회기의 시점은 모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정해야 하며 넷째, 학교운영위원회 개선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효율성을 위한 교사의 교육·연수와 토론·학술회의의 시행을 보다 활성화하고, 학교운영위원들에게 보상 및 경제적 지원과 법적 지위 향상이 개선되어야 하며, 교사의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제도 및 법령

인식도를 전반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김병삼(2004)은 오랜 기간에 구축되어 획일화된 교육체제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운영위원회의 전문성의 결여로 인한 활동 저조 등으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운영이 미흡한 실정임을 지적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적 교육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둘째, 지역사회 공동체의 구축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일반 행정직원을 포함시켜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명수(2004)는 전라북도 김제 지역의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조사 연구한 결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과 기능 등을 학교 구성원들이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 측에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둘째, 지역별, 학교 급별, 학교 규모별로 학교가 처한 지리적, 사회·문화적 특수성에 따라 운영상의 자율성이 부여되어야 하며 셋째, 학교운영위원의 구성 인원수와 구성 비율에 융통성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넷째, 기존 조직인 학부모회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학부모의 대표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선출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경은(2005)은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 간의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되어 활성화될 도모하기 위해서는 첫째, 각 운영위원들 간의 불신과 갈등이 아닌 상호이해와 협조를 필요로 하며 둘째, 지역위원의 저조한 회의 참석율이 나타날 경우 비지역 거주자라도 강한 의지 소유자이면 참여할 수 있는 선출자격의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보다 나은 학교운영위원회를 위해서는 운영위원의 전문성과 적극성을 신장시켜야 하며 여기에는 확실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박승중(2006)은 연구 결과 도출된 내용을 중심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첫째, 구성원들이 열린 마음으로 문제를 풀고, 이해와 수용으로 학교공동체를 발전시키려는 자세가 요구되며 둘째,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평가기법과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실천 가능한 구체적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학부모를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보급 및 인력풀제와 같은 학부모·지역사회 인사 관리체제 구축 등에 시·도교육청과 시·도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 선행연구의 종합적 검토

1)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선출실태 차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선출에 있어서 김수현(1997)은 학부모위원의 선출방식이 추대 등에 의한 비율이 높은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여 위원선출의 민주성 확보를 주장하였고, 윤임규(1998)는 교원위원 후보자 선정 및 선출은 대체적으로 민주적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학부모 및 지역위원의 선출은 학교장 개입으로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을 들었으며, 엄철인(1996)은 운영위원 선출에 대한 홍보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인식결과를 들었고, 곽영희(1999), 염기복(2001)도 운영위원의 선출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김병삼(2004)은 일반 행정직원을 포함시켜 구성함으로써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김기각(2000), 마영숙(2002)의 조사에서는 교원위원 비율의 상향조정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명수(2004)는 학부모회 등 조직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위하여 학부모의 대표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선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및 운영실태 차원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있어서 엄철인(1996)은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위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고, 신태균(2000)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학교가 적극적·개방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윤임규(1998)는 회의 시 주요 심의사항은 학부모부담 경비에 관한 것이었으며 학사운영이나 교육내용 관련은 거의 협의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신태균(2000)은 학부모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소위원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엄기복(2001), 황영해(2001)는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정현웅(1997), 광영희(1999), 신태균(2000), 황영해(2001), 김명수(2004)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연수기회를 확대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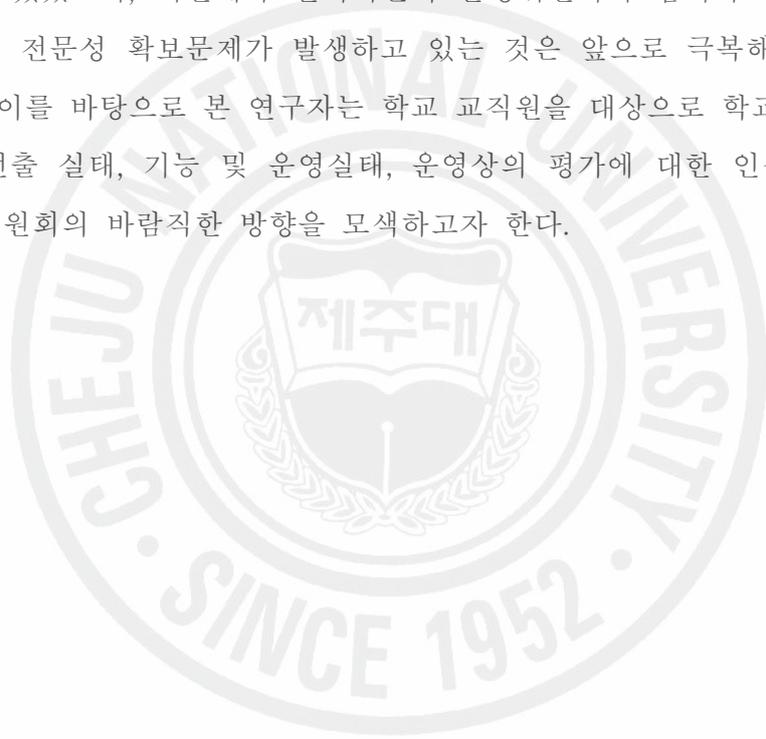
3)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상의 평가 차원

광영희(1999)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그동안 국가주도적인 학교교육의 통제구조를 민주적, 자율적 통제구조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지만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까지 기여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였으며, 앞으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정현웅(1997)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제도적인 면과 운영면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앞으로 발전적인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추진이 필요하며, 운영위원의 전문적 소양과 자질을 향상시켜 학교자율과 학교공동체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오승현(2003)은 학교운영위원들에게 보상 및 경제적 지원과 법적 지위 향상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마영숙(2002), 김경은(2005)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영위원의 전문성과 적극성 신장이 필요하며, 김경은(2005)은 여기에 확실한 제도적 뒷받침까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승중(2006)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평가기법과 도구개발에 관한 연구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및 방법을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표 2-5>에 제시하였다. 사립학교까지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시행토록 한 2000년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2000년 이전의 연구에서는 주로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실증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2001년 이후에는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를 포함하여 실증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위 선행 사례들과 우리의 현실을 살펴볼 때, 시행 12년째를 맞고 있으나 정착 단계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그 간에 학교행정의 민주적, 공개적 운영에는 많은 발전을 가져왔지만, 현 시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홍보와 참여 증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수의 중요성 등은 계속 강조되고 있어 앞으로도 중점적인 이행사항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부분이다. 교육감 선거로 선거 과열 현상까지 빚은 시기가 있었으나, 직선제가 실시되면서 운영위원회의 참여가 극히 저조하여 운영위원의 전문성 확보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로 보아진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선출 실태, 기능 및 운영실태, 운영상의 평가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표 2-5> 연도별 선행연구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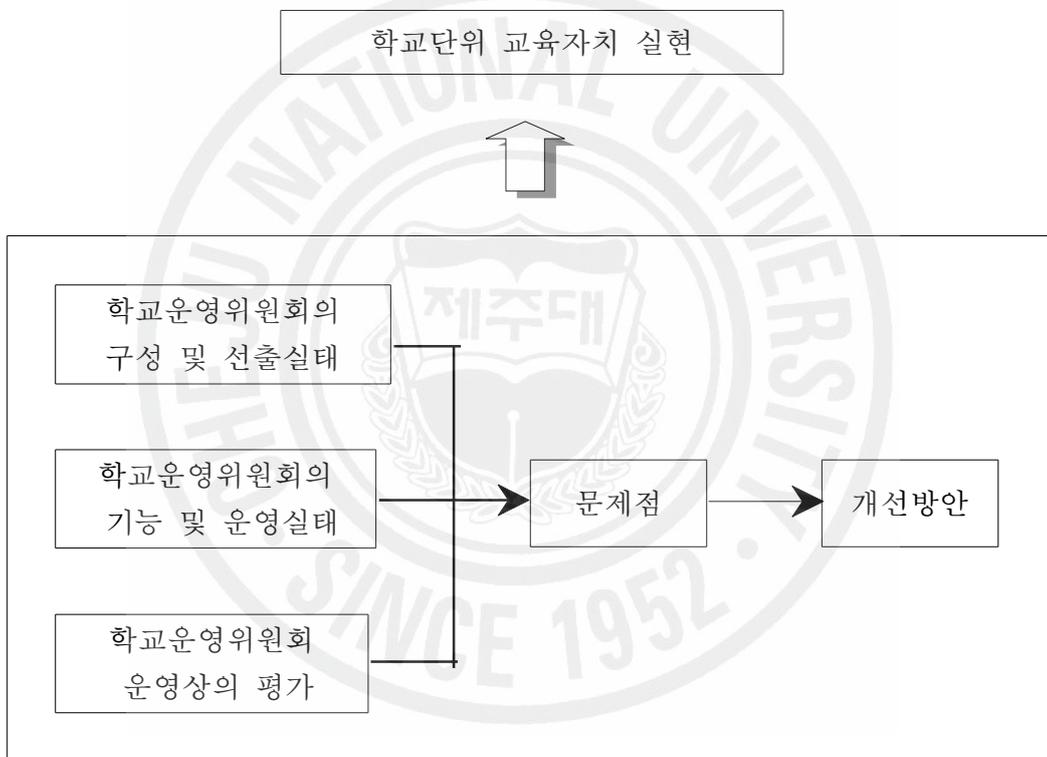
년도	연구자	연구 주제	비고
1996	염철인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학교공동체 구성원 인식 분석	초,중등
1997	김수현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실태분석	초,중등
1997	정현웅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분석 연구	초,중등
1998	윤임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교원위원들의 견해 분석	초,중등
1998	권영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개선 방안	중등
1999	곽영희	교육자치제도상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선 방안	초,중등
2000	신태균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개선 방안	초,중등
2000	김기각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중등학교 교원들의 인식 조사 연구	중등
2001	엄기복	학교운영위원회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중등
2001	황영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초등
2002	마영숙	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 분석	중등
2003	오승현	중등학교 교사의 학교운영위원회 인식도 분석	중등
2004	김병삼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와 운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선행연구 분석
2004	김명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초,중등
2005	김경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인식 연구	초등
2006	박승중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의 참여 활성화 인식 비교	선행연구 분석

제3장 연구 방법

제1절 연구모형

본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3-1> 분석모형



학교운영위원회의 목적은 자율성 확대로 단위학교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교직원·학부모·지역사회 인사 등이 자발적으로 책임 속에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공동체를 구축하며,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은 각 운영위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짐으로써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교육활동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교직원들이 먼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에 일반직원을 포함한 교직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조사·분석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모형을 만들었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선출 실태를 분석한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한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상의 평가들을 분석한다.

넷째, 위 세 가지 영역에 대한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와 학부모, 지역인사들의 적극적인 관심 속에 참여가 이루어짐으로써 활성화가 기대될 것이며, 그 중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 교직원들의 몫 또한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참여가 이루어지고 학교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때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는 활성화될 것이며,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도 창의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제2절 조사대상

본 조사는 제주 지역에 있는 초·중학교 35개교(초등학교 17교, 중학교 18개)를 표집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학교마다 일반직, 교사, 보직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지 350부를 학교행정실장에게 인편으로 배부하여 329를 회수하였다.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9부를 제외한 320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3-1>과 같다.

성별을 분석한 결과, 여성 응답자가 207명(64.7%)으로 남성 응답자 113명(35.3%)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가 근무하는 학교유형을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각각 160명(50%)으로 분포되어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자의 교직원유형을 분석한 결과, 교사가 전체 응답자의 185명(57.8%)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반직 공무원이 68명(21.3%), 보직교사가 67명(20.9%)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운영위원 참여경험을 분석한 결과,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105명(32.8%)이고,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215명(67.2%)으로 훨씬 높은 분포를 보였다.

<표 3-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13	35.3
	여성	207	64.7
학교유형	초등학교	160	50.0
	중학교	160	50.0
교직원유형	일반직	68	21.3
	교사	185	57.8
	보직교사	67	20.9
운영위원 참여경험	있다	105	32.8
	없다	215	67.2
합 계		320	100.0

제3절 조사 도구 및 내용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개선방안에 관한 설문지는 전체 3개 영역, 2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영역별로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선출 실태 8문항,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및 운영실태 7문항,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상의 평가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도구인 설문지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 외에 선행연구의 설문지를 분석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일부 인용하였고, 일부는 참고하여 연구자가 개발 구성하였다. 구성 내용별로는 첫째, 전체 26문항 중 4문항, 즉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능의 필요성 여부, 교육수요자에 대한 청원사항 논의 정도, 지역교육문제 해결 공헌도,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각 신태균(2000), 김명수(2004), 광문복(2004), 김경은(2005)의 논문을 인용하였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수와 구성비율의 적절성을 비롯한 12개 문항에 대해서는 위 열거한 연구자들의 논문과 김경은(2005)의 논문을 참고하여 재구성·사용하였으며, 셋째, 학교운영위원 선출방법의 적절성 등 10개 문항에 대해서는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연구자가 설문지를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연구를 위한 조사기간은 2007년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로 정하고, 설문지의 설문내용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7년 3월 25일부터 4월 2일까지 약 1주일 간 관내 초·중학교 일반직, 교사 및 보직교사 20명을 대상으로 표본 추출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영역별 문항내용은 <표 3-2>과 같다.

<표3-2> 설문조사 영역별 문항내용

영역	문항내용	관련문항	비고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선출실태	학교운영위원의 정수의 적절성	1	재구성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비율의 적절성	2	재구성
	학교운영위원의 선출방법의 적절성	3	개발
	교원위원의 선출방법	4	개발
	학부모위원의 선출방법	5	개발
	지역위원의 선출방법	6	개발
	학교장의 당연직위원 참여 동의여부	7	재구성
	교원위원·학부모위원의 선출에 대한 문제점	8	개발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및 운영실태	학교운영위원회 항목별 심의기능의 필요성	9	인용
	학교발전기금의 심의·의결 기능의 적절성	10	개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의 적절성	11	재구성
	학교운영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성	12	재구성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의 필요성	13	재구성
	교육수요자의 청원사항에 대한 논의 정도	14	인용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	15	인용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상의 평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결과 항목별 성과도	16	재구성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결과 종합 평가도	17	개발
	지역의 교육문제에 대한 공헌도	18	인용
	학교운영위원회와 자생기관과의 유대관계	19	재구성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로 나타나는 문제점	20	재구성
	자생기관 대표 등의 운영위원 겸임 필요성	21	재구성
	지급안건의 서면 심의의 필요성	22	개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 참여 필요성	23	재구성
	회의참석 수당 등의 법적 명시 필요성	24	개발
	일반직원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필요성	25	개발
	학교운영위원회의 우선적 해결 과제	26	재구성

제4절 자료의 처리방법

연구를 위해 제주 지역 초·중학교 35개교 교사, 보직교사, 일반직원 350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329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9부를 제외한 320부를 최종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처리는 첫째, 연구문제에 따라 기초통계량을 알아보고자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고 둘째, 응답자의 성별, 학교유형별, 운영위원 참여경험별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인식의 분포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제곱(X^2)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처리는 컴퓨터 통계 패키지인 SPSS WIN 12.0(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for WINDOW)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처리하였다.



제4장 연구결과 분석

제1절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선출에 대한 분석

1. 학교운영위원 정수와 구성비율

1) 학교운영위원의 정수 적정성

현행 학교운영위원 정수는 학생수 200명 미만인 경우는 5-8명, 200명 이상 1,000명 미만 9-12명, 1,000명 이상 13-15명이다. 학교운영위원 정수의 적정성에 대한 설문 결과, 전체 응답자 320명 중 246명(76.9%)이 '적당하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잘 모르겠다' 35명(10.9%), '많은 편이다' 27명(8.4%), '적은 편이다' 12명(3.8%)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 학교운영위원 정수에 대한 의견

구분	빈도(명)	비율(%)
적은 편이다	12	3.8
적당하다	246	76.9
많은 편이다	27	8.4
잘 모르겠다	35	10.9
합계	320	100.0

각 변수별 응답의 분포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학교유형별을 제외한 운영위원 참여경험별 응답에서 유의미한 분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위원 참여경험별에서는 두 집단 모두 적당하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경험이 있다는 집단에서는 적은 편이라는 응답비율이, 경험이 없다는 집단에서는 많은 편이라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 < .001$)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학교운영위원 정수에 대한 의견(분포차이)

(단위: 명(%))

구 분		학교운영위원 정수에 대한 의견				전체	x ² (p)
		적은편이다	적당하다	많은편이다	잘모르겠다		
성별	남	5(4.4)	93(82.3)	9(8)	6(5.3)	113(100)	5.986 (.112)
	여	7(3.4)	153(73.9)	18(8.7)	29(14)	207(100)	
학교 유형	초등학교	6(3.8)	122(76.2)	14(8.8)	18(11.2)	160(100)	.082 (.994)
	중학교	6(3.8)	124(77.5)	13(8.1)	17(10.6)	160(100)	
운영위원 참여경험	있다	9(8.5)	87(82.9)	6(5.7)	3(2.9)	105(100)	21.118 (.000 ^{***})
	없다	3(1.4)	159(74)	21(9.7)	32(14.9)	215(100)	

* p<.05 ** p<.01 *** p<.001

2) 학교운영위원의 구성비율 적정성

현행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40-50%, 교원위원 30-40%, 지역위원 10-30%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학교운영위원의 구성비율 적정성에 대한 응답 결과는 전체 응답자의 61.6%인 197명이 '적당하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학부모위원의 구성비율을 줄여야 한다' 25.9%, '지역위원의 구성비율을 줄여야 한다' 6.3%, '교원위원의 구성비율을 줄여야 한다' 2.5%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 학교운영위원회 구성비율에 대한 의견

구 분	빈도(명)	비율(%)
적당하다	197	61.6
학부모위원의 구성비율을 줄여야 한다	83	25.9
교원위원의 구성비율을 줄여야 한다	8	2.5
지역위원의 구성비율을 줄여야 한다	20	6.3
기 타	12	3.7
합 계	320	100.0

각 변수별 응답의 분포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학교유형별, 교직원유형별,

운영위원 참여경험별 모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비율에 대한 응답의 분포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없었다.

2. 학교운영위원 선출방법

1) 교원위원의 선출방법

학교운영위원 중 교원위원의 선출방법을 살펴보면,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한 선출방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선출방법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83.0%가 응답한 '정수 등록에 의한 무투표 당선에 의한 선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등록자가 없어 추천에 의한 선출'이 6.3%로 나타났다.

<표 4-4> 교원위원 선출방법

구 분	빈도(명)	비율(%)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선거	-	-
정수 등록으로 무투표 당선선출	264	83.0
추천에 의해 선출	20	6.3
무투표당선, 추천	16	5.0
기 타	18	5.7
합 계	318	100.0

이상과 같은 교원위원 선출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응답에서는, 전체 응답자 320명 중 76.3%인 244명이 '대체로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매우 적절하다' 15.9%, '대체로 부적절하다' 4.7%, '매우 부적절하다' 3.1%로 '대체적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교원위원 선출방법의 적절성

구 분	빈도(명)	비율(%)
매우 부적절하다	10	3.1
대체로 부적절하다	15	4.7
대체로 적절하다	244	76.3
매우 적절하다	51	15.9
합 계	320	100.0

각 변수별 응답의 분포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과 운영위원 참여경험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 학교유형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6> 교원위원 선출방법의 적절성(분포차이)

(단위: 명(%))

구 분	교원위원 선출방법의 적절성				전체	x ² (p)
	매우 부적절함	대체로 부적절함	대체로 적절함	매우 적절함		
성별	남	7(6.2)	6(5.3)	72(63.7)	28(24.8)	113(100) (.001**)
	여	3(1.5)	9(4.3)	172(83.1)	23(11.1)	
학교 유형	초등학교	3(1.9)	8(5)	128(80)	21(13.1)	160(100) (.279)
	중학교	7(4.4)	7(4.4)	116(72.6)	30(18.8)	
운영위원 참여경험	있다	8(7.6)	5(4.7)	68(64.8)	24(22.9)	105(100) (.001**)
	없다	2(0.9)	10(4.6)	176(81.9)	27(12.6)	

* p<.05 ** p<.01 *** p<.001

성별에 따른 응답결과에서는 남성의 경우 '대체로 적절하다'는 응답이 6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매우 적절하다' 24.8%, '매우 부적절하다' 6.2%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는 '대체로 적절하다'는 응답이 83.1%로 가장 높아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매우 적절하다' 11.1%, '대체로 부적절하다' 4.3%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01)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위원 참여경험별에 따른 응답결과에서는 경험이 있다는 집단의 경우 '대체로 적절하다'는 응답이 6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매우 적절하다' 22.9%, '매우 부적절하다' 7.6% 순으로 나타났다. 경험이 없다는 집단의 경우에는 '대체로 적절하다'는 응답이 81.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험이 있다는 집단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매우 적절하다' 12.6%, '대체로 부적절하다' 4.7%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 < .01$)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에 학교장을 참여시키는 데에 대한 질문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동의한다' 172명(53.9%), '매우 동의한다' 122명(38.2%),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21명(6.6%)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응답자의 90% 이상의 응답자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당연직 교원위원에 학교장의 참여에 대한 의견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	1.3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21	6.6
대체로 동의한다	172	53.9
매우 동의한다	122	38.2
합계	319	100.0

각 변수별로 당연직 교원위원에 학교장의 참여에 대한 응답의 분포를 살펴보면, 성별($p < .05$), 운영위원 참여경험별($p < 0.1$) 응답 분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당연직 교원위원에 학교장의 참여에 대한 의견(분포차이)

(단위: 명(%))

구 분		당연직 교원위원에 학교장의 참여				전 체	x ² (p)
		전혀 동의 않음	대체로 동의 않음	대체로 동의함	매우 동의함		
성별	남	4(3.6)	6(5.3)	53(46.9)	50(44.2)	113(100)	10.969 (.012*)
	여	-	15(7.3)	119(57.7)	72(35)	206(100)	
운영위원 참여경험	있다	2(1.9)	9(8.6)	42(40)	52(49.5)	105(100)	12.299 (.006**)
	없다	2(1.0)	12(5.6)	130(60.7)	70(32.7)	214(100)	

* p<.05 ** p<.01 *** p<.001

2) 학부모위원의 선출방법

학교운영위원 중 학부모위원의 선출방법을 살펴보면, 학부모총회에서 직접선거와 학부모 임원에 의한 간접선거 등 선거에 의한 선출방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선출방법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85.5%가 응답한 '정수 등록으로 무투표 당선에 의한 선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무투표 당선 또는 추천에 의한 선출' 7.6%, 기타 6.9% 등으로 나타났다.

<표 4-9> 학부모위원 선출방법

구 분	빈도(명)	비율(%)
학부모총회에서 직접선거	-	-
학부모임원에 의한 간접선거	-	-
정수 등록으로 무투표 당선 선출	272	85.5
무투표당선, 추천	24	7.6
기 타	22	6.9
합 계	318	100.0

학부모위원의 선출방법 적절성에 대한 응답에서는 '대체로 적절하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76.6%(24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매우 적절하다' 13.1%, '대체로 부적절하다' 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0> 학부모위원 선출방법의 적절성

구 분	빈도(명)	비율(%)
매우 부적절하다	12	3.8
대체로 부적절하다	21	6.5
대체로 적절하다	245	76.6
매우 적절하다	42	13.1
합 계	320	100.0

각 변수별 응답의 분포 차이를 살펴보면, 학교유형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응답의 분포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성별과 운영위원 참여경험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응답의 분포 차이가 나타났다.

<표 4-11> 학부모위원 선출방법의 적절성(분포차이)

(단위: 명(%))

구 분	학부모위원 선출방법의 적절성				전체	x ² (p)
	매우 부적절함	대체로 부적절함	대체로 적절함	매우 적절함		
성별	남	6(5.3)	8(7.1)	72(63.7)	27(23.9)	113(100) 20.404 (.000***)
	여	6(2.9)	13(6.3)	173(83.6)	15(7.2)	
학교 유형	초등학교	6(3.8)	10(6.2)	126(78.8)	18(11.2)	160(100) 1.105 (.776)
	중학교	6(3.8)	11(6.9)	119(74.3)	24(15)	
운영위원 참여경험	있다	7(6.6)	9(8.6)	70(66.7)	19(18.1)	105(100) 9.447 (.024*)
	없다	5(2.3)	12(5.6)	175(81.4)	23(10.7)	

* p<.05 ** p<.01 *** p<.001

성별에 따른 응답결과에서는 남성의 경우 '대체로 적절하다'는 응답이 6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매우 적절하다' 23.9%, '대체로 부적절하다' 7.1%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는 '대체로 적절하다'는 응답이 83.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매우 적절하

다' 7.2%, '대체로 부적절하다' 6.3%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 < .001$)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위원 참여경험별에 따른 응답결과에서는 경험이 있다는 집단의 경우 '대체로 적절하다'는 응답이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매우 적절하다' 18.1%, '대체로 부적절하다' 8.6% 순으로 나타났다. 경험이 없다는 집단의 경우에는 '대체로 적절하다'는 응답이 81.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험이 있다는 집단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매우 적절하다' 10.7%, '대체로 부적절하다' 5.6%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 < .05$) 것으로 나타났다.

3) 지역위원의 선출방법

학교운영위원 중 지역위원의 선출방법을 살펴보면, 직접선거에 의한 선출방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선출방법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92.6%가 응답한 정수 추천에 의한 선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지역위원 선출방법

구 분	빈도(명)	비율(%)
직접선거	-	-
정수추천에 의한 선출	290	92.6
정수 미달로 2차 추천 선출	9	2.9
기 타	14	4.5
합 계	313	100.0

지역위원의 선출방법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응답 결과에서는 '대체로 적절하다'는 응답이 77.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매우 적절하다' 11.3%, '대체로 부적절하다' 9.0%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3> 지역위원 선출방법의 적절성

구 분	빈도(명)	비율(%)
매우 부적절하다	7	2.2
대체로 부적절하다	29	9.0
대체로 적절하다	248	77.5
매우 적절하다	36	11.3
합 계	320	100.0

각 변수별로 응답의 분포 차이를 살펴보면, 학교유형별에서는 응답의 분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성별과 운영위원 참여경험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지역위원 선출방법의 적절성(분포차이)

(단위: 명(%))

구 분		지역위원 선출방법의 적절성				전체	x ² (p)
		매우 부적절함	대체로 부적절함	대체로 적절함	매우 적절함		
성별	남	5(4.4)	10(8.9)	73(64.6)	25(22.1)	113(100)	26.116 (.000***)
	여	2(1)	19(9.2)	175(84.5)	11(5.3)	207(100)	
학교 유형	초등학교	1(0.6)	16(10)	127(79.4)	16(10)	160(100)	4.471 (.215)
	중학교	6(3.8)	13(8.1)	121(75.6)	20(12.5)	160(100)	
운영위원 참여경험	있다	6(5.7)	9(8.6)	73(69.5)	17(16.2)	105(100)	13.601 (.004**)
	없다	1(0.5)	20(9.3)	175(81.4)	19(8.8)	215(100)	

* p<.05 ** p<.01 *** p<.001

성별에 따른 응답결과에서는 남성의 경우 '대체로 적절하다'는 응답이 6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매우 적절하다' 22.1%, '대체로 부적절하다' 8.8%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는 '대체로 적절하다'는 응답이 84.5%로 가장 높아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대체로 부적절하다' 9.2%, '매우 적절하다' 5.3%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 집단은 '매우 적절하다'는 응답비율

이, 여성집단은 '대체로 부적절하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 < .001$)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위원 참여경험별에 따른 응답결과에서는 경험이 있다는 집단의 경우 '대체로 적절하다'는 응답이 6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매우 적절하다' 16.2%, '대체로 부적절하다' 8.6% 순으로 나타났다. 경험이 없다는 집단의 경우에는 '대체로 적절하다'는 응답이 8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대체로 부적절하다' 9.3%, '매우 적절하다' 8.8% 순으로 나타났다. 경험이 있다는 집단에서는 '매우 적절하다'는 응답비율이, 경험이 없다는 집단에서는 '대체로 부적절하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 < .01$) 것으로 나타났다.

4)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 선출의 문제점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자발적 입후보 등록 저조'가 64.9%(207명)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직접선거의 어려움' 13.5%, '선출에 대한 홍보 미흡' 11.9%, '민주적 선출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 6.3%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5> 교원위원·학부모위원 선출의 문제점

구 분	빈도(명)	비율(%)
선출에 대한 홍보 미흡	38	11.9
자발적 입후보 등록 저조	207	64.9
민주적 선출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	20	6.3
직접 선거의 어려움	43	13.5
기 타	11	3.4
합 계	319	100.0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대한 분석

현재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개정을 비롯하여 학교의 예산 및 결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 방과 후·방학 중의 교육 및 수련활동,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학부모·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등과 관련된 청원사항,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수련·야영 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학부모 및 일반인 대상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기능을 갖고 있다.

1.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능 필요성 인식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개정 심의기능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중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개정 심의기능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54.1%(17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30.6%, '전혀 필요하지 않다' 8.1%, '매우 필요하다' 7.2%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필요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비율이 38.7%인 반면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61.3%로 나타났다.

<표 4-16>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개정의 심의기능의 필요성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필요하지 않다	26	8.1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98	30.6
대체로 필요하다	173	54.1
매우 필요하다	23	7.2
합계	320	100.0

각 변수별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개정 심의기능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의 분포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응답의 분포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포의 차이($p < .001$)가 나타났을 뿐 학교유형별, 운영위원 참여경험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17> 학교현장 및 학칙의 제·개정 심의기능의 필요성(분포차이)

(단위: 명(%))

구 분		학교현장 및 학칙의 제·개정 심의 기능의 필요성				전 체	x ² (p)
		전혀 필요하지 않음	대체로 필요하지 않음	대체로 필요함	매우 필요함		
성별	남	15(13.3)	26(23)	57(50.4)	15(13.3)	113(100)	18.437 (.000 ^{***})
	여	11(5.3)	72(34.8)	116(56)	8(3.9)	207(100)	
학교 유형	초등학교	8(5)	50(31.2)	92(57.5)	10(6.3)	160(100)	4.978 (.173)
	중학교	18(11.3)	48(30)	81(50.6)	13(8.1)	160(100)	
운영위원 참여경험	있다	11(10.5)	30(28.6)	54(51.4)	10(9.5)	105(100)	2.666 (.446)
	없다	15(7)	68(31.6)	119(55.4)	13(6)	215(100)	

* p<.05 ** p<.01 *** p<.001

2) 학교 예·결산의 심의기능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중 학교 예·결산 심의기능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64.1%(20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매우 필요하다' 20.6%,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12.8%, '전혀 필요하지 않다' 2.5%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84.7%로 나타났다.

<표 4-18> 학교 예·결산의 심의기능의 필요성

구 분	빈도(명)	비율(%)
전혀 필요하지 않다	8	2.5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41	12.8
대체로 필요하다	205	64.1
매우 필요하다	66	20.6
합 계	320	100.0

각 변수별 학교 예·결산 심의기능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의 분포를 살펴보면, 성별과 운영위원 참여경험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05)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9> 학교 예·결산의 심의기능의 필요성(분포차이)

(단위: 명(%))

구 분		학교 예·결산의 심의 기능의 필요성				전 체	x ² (p)
		전혀 필요하지 않음	대체로 필요하지 않음	대체로 필요함	매우 필요함		
성별	남	6(5.3)	16(14.1)	63(55.8)	28(24.8)	113(100)	9.108 (.028*)
	여	2(1)	25(12.1)	142(68.5)	38(18.4)	207(100)	
학교 유형	초등학교	4(2.5)	22(13.8)	100(62.5)	34(21.2)	160(100)	.402 (.940)
	중학교	4(2.5)	19(11.9)	105(65.6)	32(20)	160(100)	
운영위원 참여경험	있다	4(3.8)	12(11.4)	57(54.3)	32(30.5)	105(100)	10.991 (.012*)
	없다	4(1.9)	29(13.5)	148(68.8)	34(15.8)	215(100)	

* p<.05 ** p<.01 *** p<.001

학교운영위원 참여경험별로 살펴보면, 참여경험이 있는 집단의 경우 '대체로 필요하다'가 5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매우 필요하다' 30.5%,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11.4%로 나타났으며, 참여경험이 없는 집단의 경우에는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6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매우 필요하다' 15.8%,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13.5%로 나타났다. 운영위원 참여경험이 있는 집단의 경우에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경험이 없는 집단의 경우에는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심의기능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중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심의기능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52.8%(169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32.5%, '매우 필요하다' 7.5%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60.3%로 나타났다.

<표 4-20>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의 심의기능의 필요성

구 분	빈도(명)	비율(%)
전혀 필요하지 않다	23	7.2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104	32.5
대체로 필요하다	169	52.8
매우 필요하다	24	7.5
합 계	320	100.0

각 변수별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심의기능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의 분포를 살펴보면, 성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 < .05$)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의 심의기능의 필요성(분포차이)

(단위: 명(%))

구 분		학교교육과정 운영방법의 심의 기능의 필요성				전 체	$\chi^2(p)$
		전혀 필요하지 않음	대체로 필요하지 않음	대체로 필요함	매우 필요함		
성별	남	14(12.4)	35(31)	54(47.8)	10(8.8)	113(100)	7.961 (.047*)
	여	9(4.3)	69(33.3)	115(55.6)	14(6.8)	207(100)	
학교 유형	초등학교	6(3.8)	56(35)	84(52.5)	14(8.7)	160(100)	6.549 (.088)
	중학교	17(10.6)	48(30)	85(53.1)	10(6.3)	160(100)	
운영위원 참여경험	있다	10(9.5)	37(35.2)	49(46.7)	9(8.6)	105(100)	2.904 (.407)
	없다	13(6)	67(31.2)	120(55.8)	15(7)	215(100)	

* $p < .05$ ** $p < .01$ *** $p < .001$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의 심의기능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중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의 심의기능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43.7%(140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43.1%, '전혀 필요하지 않다'

9.4%, '매우 필요하다' 3.8%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47.5%인 반면, 필요 없다는 부정적인 응답비율이 52.5%로서 긍정적인 응답비율보다 부정적인 응답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의 심의기능의 필요성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필요하지 않다	30	9.4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138	43.1
대체로 필요하다	140	43.7
매우 필요하다	12	3.8
합계	320	100.0

각 변수별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의 심의기능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의 분포를 살펴보면, 성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 < .05$)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3>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의 심의기능의 필요성(분포차이)

(단위: 명(%))

구분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의 심의 기능의 필요성				전체	$\chi^2(p)$
		전혀 필요하지 않음	대체로 필요하지 않음	대체로 필요함	매우 필요함		
성별	남	14(12.4)	47(41.6)	44(38.9)	8(7.1)	113(100)	7.877 (.049*)
	여	16(7.7)	91(44)	96(46.4)	4(1.9)	207(100)	
학교 유형	초등학교	11(6.9)	71(44.4)	73(45.6)	5(3.1)	160(100)	2.840 (.417)
	중학교	19(11.9)	67(41.8)	67(41.9)	7(4.4)	160(100)	
운영위원 참여경험	있다	14(13.3)	39(37.2)	46(43.8)	6(5.7)	105(100)	5.517 (.138)
	없다	16(7.5)	99(46)	94(43.7)	6(2.8)	215(100)	

* $p < .05$ ** $p < .01$ *** $p < .001$

5) 방과 후·방학 중의 교육 및 수련활동의 심의기능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중 방과 후·방학 중의 교육 및 수련활동의 심의기능 필요성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62.2%(199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25.3%, '매우 필요하다' 6.6%, '전혀 필요하지 않다' 5.9%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68.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4> 방과후·방학중의 교육 및 수련활동의 심의기능의 필요성

구 분	빈도(명)	비율(%)
전혀 필요하지 않다	19	5.9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81	25.3
대체로 필요하다	199	62.2
매우 필요하다	21	6.6
합 계	320	100.0

각 변수별 방과 후·방학 중의 교육 및 수련활동 심의기능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의 분포를 살펴보면, 성별과 운영위원 참여경험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05)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5> 방과후·방학중의 교육 및 수련활동의 심의기능의 필요성(분포차이)

(단위: 명(%))

구 분		방과후·방학중의 교육 및 수련활동의 심의 기능의 필요성				전 체	x ² (p)
		전혀 필요하지 않음	대체로 필요하지 않음	대체로 필요함	매우 필요함		
성별	남	10(8.8)	23(20.4)	67(59.3)	13(11.5)	113(100)	10.928 (.012*)
	여	9(4.3)	58(28)	132(63.8)	8(3.9)	207(100)	
학교 유형	초등학교	7(4.4)	45(28.1)	100(62.5)	8(5)	160(100)	3.511 (.319)
	중학교	12(7.5)	36(22.5)	99(61.9)	13(8.1)	160(100)	
운영위원 참여경험	있다	11(10.5)	25(23.8)	59(56.2)	10(9.5)	105(100)	8.554 (.036*)
	없다	8(3.8)	56(26)	140(65.1)	11(5.1)	215(100)	

* p<.05 ** p<.01 *** p<.001

6)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의 심의기능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중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의 심의기능 필요성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70.3%(22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매우 필요하다' 19.4%,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7.5%, '전혀 필요하지 않다' 2.8%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90.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6>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의 심의기능의 필요성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필요하지 않다	9	2.8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24	7.5
대체로 필요하다	225	70.3
매우 필요하다	62	19.4
합계	320	100.0

각 변수별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의 심의기능 필요성에 대한 응답의 분포를 살펴보면, 운영위원 참여경험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05)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운영위원 참여경험에서 참여경험이 있는 집단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참여경험이 없는 집단의 경우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의 심의기능의 필요성(분포차이)

(단위: 명(%))

구분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의 심의 기능의 필요성				전체	x ² (p)
		전혀 필요하지 않음	대체로 필요하지 않음	대체로 필요함	매우 필요함		
성별	남	7(6.2)	9(8)	74(65.4)	23(20.4)	113(100)	7.820 (.050)
	여	2(1)	15(7.3)	151(72.9)	39(18.8)		
학교 유형	초등학교	3(1.9)	15(9.4)	108(67.5)	34(21.2)	160(100)	3.441 (.329)
	중학교	6(3.8)	9(5.6)	117(73.1)	28(17.5)	160(100)	
운영위원 참여경험	있다	4(3.8)	8(7.6)	63(60.0)	30(28.6)	105(100)	9.741 (.021*)
	없다	5(2.4)	16(7.4)	162(75.3)	32(14.9)	215(100)	

* p<.05 ** p<.01 *** p<.001

7) 학교운동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기능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중 학교운동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기능 필요성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60.9%(195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23.8%, '매우 필요하다' 11.5%, '전혀 필요하지 않다' 3.8%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72.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8> 학교운동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기능의 필요성

구 분	빈도(명)	비율(%)
전혀 필요하지 않다	12	3.8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76	23.8
대체로 필요하다	195	60.9
매우 필요하다	37	11.6
합 계	320	100.0

각 변수별 학교운동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기능 필요성에 대한 응답의 분포를 살펴보면,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8)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청원사항의 심의기능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중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청원사항의 심의기능 필요성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70.3%(22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매우 필요하다' 18.8%,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7.8%, '전혀 필요하지 않다' 3.1%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89.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9>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청원사항의 심의기능의 필요성

구 분	빈도(명)	비율(%)
전혀 필요하지 않다	10	3.1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25	7.8
대체로 필요하다	225	70.3
매우 필요하다	60	18.8
합 계	320	100.0

각 변수별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청원사항의 심의기능 필요성에 대한 응답의 분포를 살펴보면,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9)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의 심의기능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중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의 심의기능 필요성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62.2%(199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다음은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17.8%, '매우 필요하다' 15.3%, '전혀 필요하지 않다' 4.7%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77.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0>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의 심의기능의 필요성

구 분	빈도(명)	비율(%)
전혀 필요하지 않다	15	4.7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57	17.8
대체로 필요하다	199	62.2
매우 필요하다	49	15.3
합 계	320	100.0

각 변수별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의 심의기능 필요성에 대한 응답의 분포를 살펴보면, 성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 < .05$)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의 심의기능의 필요성(분포차이)

(단위: 명(%))

구 분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의 심의 기능의 필요성				전 체	x ² (p)
		전혀 필요하지 않음	대체로 필요하지 않음	대체로 필요함	매우 필요함		
성별	남	10(8.9)	18(15.9)	65(57.5)	20(17.7)	113(100)	8.065 (.045*)
	여	5(2.4)	39(18.9)	134(64.7)	29(14)	207(100)	
학교 유형	초등학교	5(3.1)	29(18.1)	98(61.3)	28(17.5)	160(100)	2.729 (.435)
	중학교	10(6.3)	28(17.5)	101(63.1)	21(13.1)	160(100)	
운영위원 참여경험	있다	7(6.7)	21(20)	60(57.1)	17(16.2)	105(100)	2.444 (.486)
	없다	8(3.7)	36(16.7)	139(64.7)	32(14.9)	215(100)	

* p<.05 ** p<.01 *** p<.001

10) 교복 및 체육복 선정의 심의기능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중 교복 및 체육복 선정의 심의기능 필요성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65.9%(211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16.6%, '매우 필요하다' 11.9%, '전혀 필요하지 않다' 5.6%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77.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2> 교복 및 체육복 선정의 심의기능의 필요성

구 분	빈도(명)	비율(%)
전혀 필요하지 않다	18	5.6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53	16.6
대체로 필요하다	211	65.9
매우 필요하다	38	11.9
합 계	320	100.0

각 변수별 교복 및 체육복 선정의 심의기능 필요성에 대한 응답의 분포를 살

펴보면, 성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05)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3> 교복 및 체육복 선정의 심의기능의 필요성(분포차이)

(단위: 명(%))

구 분		교복 및 체육복 선정의 심의 기능의 필요성				전 체	x ² (p)
		전혀 필요하지 않음	대체로 필요하지 않음	대체로 필요함	매우 필요함		
성별	남	8(7.1)	15(13.2)	68(60.2)	22(19.5)	113(100)	11.160 (.011*)
	여	10(4.8)	38(18.4)	143(69.1)	16(7.7)	207(100)	
학교 유형	초등학교	8(5)	29(18.1)	106(66.3)	17(10.6)	160(100)	1.120 (.772)
	중학교	10(6.3)	24(15)	105(65.6)	21(13.1)	160(100)	
운영위원 참여경험	있다	7(6.7)	13(12.4)	67(63.8)	18(17.1)	105(100)	5.711 (.127)
	없다	11(5.1)	40(18.6)	144(67)	20(9.3)	215(100)	

* p<.05 ** p<.01 *** p<.001

11)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의 심의기능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중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의 심의기능 필요성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68.1%(218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매우 필요하다' 15.6%,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12.5%, '전혀 필요하지 않다' 3.8%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83.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4>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의 심의기능의 필요성

구 분	빈도(명)	비율(%)
전혀 필요하지 않다	12	3.8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40	12.5
대체로 필요하다	218	68.1
매우 필요하다	50	15.6
합 계	320	100.0

각 변수별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의 심의기능 필요성에 대한 응답의 분포를 살펴보면, 성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05)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5>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의 심의기능의 필요성(분포차이)

(단위: 명(%))

구 분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의 심의 기능의 필요성				전 체	x ² (p)
		전혀 필요하지 않음	대체로 필요하지 않음	대체로 필요함	매우 필요함		
성별	남	8(7.1)	12(10.6)	70(61.9)	23(20.4)	113(100)	9.138 (.028*)
	여	4(2.0)	28(13.5)	148(71.5)	27(13)	207(100)	
학교 유형	초등학교	5(3.1)	23(14.4)	111(69.4)	21(13.1)	160(100)	2.587 (.460)
	중학교	7(4.4)	17(10.6)	107(66.9)	29(18.1)	160(100)	
운영위원 참여경험	있다	5(4.7)	14(13.3)	64(61)	22(21)	105(100)	4.532 (.209)
	없다	7(3.3)	26(12.1)	154(71.6)	28(13)	215(100)	

* p<.05 ** p<.01 *** p<.001

12) 학부모 및 일반인 대상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설치·운영의 심의기능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중 학부모 및 일반인 대상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설치·운영의 심의사항 필요성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66.9%(21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16.9%, '매우 필요하다' 11.8%, '전혀 필요하지 않다' 4.4%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78.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6> 학부모 및 일반인 대상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설치·운영의 심의기능의 필요성

구 분	빈도(명)	비율(%)
전혀 필요하지 않다	14	4.4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54	16.9
대체로 필요하다	214	66.9
매우 필요하다	38	11.8
합 계	320	100.0

각 변수별 학부모 및 일반인 대상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설치·운영의 심의기능 필요성에 대한 응답의 분포를 살펴보면, 성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05)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7> 학부모 및 일반인 대상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설치·운영의 심의기능의 필요성(분포차이) (단위: 명(%))

구 분		학부모 등 평생교육프로그램 설치·운영의 심의 기능의 필요성				전 체	x ² (p)
		전혀 필요하지 않음	대체로 필요하지 않음	대체로 필요함	매우 필요함		
성별	남	10(8.9)	18(15.9)	70(61.9)	15(13.3)	113(100)	9.009 (.029*)
	여	4(1.9)	36(17.4)	144(69.6)	23(11.1)	207(100)	
학교 유형	초등학교	5(3.1)	20(12.5)	118(73.8)	17(10.6)	160(100)	7.455 (.059)
	중학교	9(5.6)	34(21.3)	96(60)	21(13.1)	160(100)	
교원위원 참여경험	있다	6(5.7)	19(18.1)	67(63.8)	13(12.4)	105(100)	1.032 (.794)
	없다	8(3.7)	35(16.3)	147(68.4)	25(11.6)	215(100)	

* p<.05 ** p<.01 *** p<.001

13)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기능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 중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매우 적절하다'는 응답이 75.0%(240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대체로 적절하지 않다' 15.3%, '매우 적절하다' 7.8%, '전혀 적절하지 않다' 1.9% 순으로 나타났

다. 전체 응답자 중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기능에 대해 적절하다는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82.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8>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기능의 적절성

구 분	빈도(명)	비율(%)
전혀 적절하지 않다	6	1.9
대체로 적절하지 않다	49	15.3
대체로 적절하다	240	75.0
매우 적절하다	25	7.8
합 계	320	100.0

2.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실태

1)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개최 횟수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개최 횟수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적절하게 개최되고 있다'는 응답이 79.7%(255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다음은 '필요한 만큼 개최되지 않고 있다' 7.8%, '과다하게 개최되고 있다' 3.1%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9>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개최 횟수의 적절성

구 분	빈도(명)	비율(%)
과다하게 개최되고 있다	10	3.1
적절하게 개최되고 있다	255	79.7
필요한 만큼 개최되지 않고 있다	25	7.8
잘 모르겠다	30	9.4
합 계	320	100.0

2)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 민주성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성에 대한 응답 결

과로 ‘대체로 민주적이다’라는 응답이 74.3%(237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대체로 비민주적이다’ 16.6%, ‘매우 민주적이다’ 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민주적이라는 긍정적 응답이 81.2%인 반면, 비민주적이라는 부정적 응답도 18.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0>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성

구 분	빈도(명)	비율(%)
아주 비민주적이다	7	2.2
대체로 비민주적이다	53	16.6
대체로 민주적이다	237	74.3
매우 민주적이다	22	6.9
합 계	319	100.0

각 변수별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성 여부에 대한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성별과 학교유형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운영위원 참여경험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 < .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집단의 경우 ‘대체로 민주적’이라는 응답이 65.7%로 가장 높았으나, ‘대체로 비민주적’이라는 응답비율도 21.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참여경험이 없는 집단의 경우에는 ‘대체로 민주적’이라는 응답비율이 7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대체로 비민주적이다’ 14.0%로 나타났다. 참여경험이 있는 집단의 경우에는 ‘대체로 비민주적이다’, ‘아주 비민주적이다’ 응답비율이 참여경험이 없는 집단의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1>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성(분포차이)

(단위: 명(%))

구 분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성				전 체	x ² (p)
		아주 비민주적임	대체로 비민주적임	대체로 민주적임	매우 민주적임		
성별	남	5(4.4)	19(6.8)	79(69.9)	10(8.8)	113(100)	5.392 (.145)
	여	2(1)	34(16.5)	158(76.7)	12(5.8)	206(100)	
학교 유형	초등학교	3(1.9)	27(17)	119(74.8)	10(6.3)	159(100)	.345 (.951)
	중학교	4(2.5)	26(16.3)	118(73.8)	12(7.5)	160(100)	
운영위원 참여경험	있다	5(4.8)	23(21.9)	69(65.7)	8(7.6)	105(100)	9.008 (.029*)
	없다	2(0.9)	30(14)	168(78.5)	14(6.5)	214(100)	

* p<.05 ** p<.01 *** p<.001

3)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필요성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의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예결산소위원회, 급식소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48.1%(15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36.9%, ‘전혀 필요하지 않다’ 11.2%, ‘매우 필요하다’ 3.8%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소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긍정적 응답은 51.9%인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부정적 응답은 48.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2>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필요성

구 분	빈도(명)	비율(%)
전혀 필요하지 않다	36	11.2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118	36.9
대체로 필요하다	154	48.1
매우 필요하다	12	3.8
합 계	320	100.0

각 변수별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성별과 운영위원 참여경험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포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은 반면, 학교유형별(p<.05)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3>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필요성(분포차이)

(단위: 명(%))

구 분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필요성				전 체	x ² (p)
		전혀 필요하지 않음	대체로 필요하지 않음	대체로 필요함	매우 필요함		
성별	남	17(15)	43(38.1)	50(44.2)	3(2.7)	113(100)	3.405 (.333)
	여	19(9.2)	75(35.9)	104(50.5)	9(4.4)	206(100)	
학교 유형	초등학교	10(6.2)	64(40)	78(48.8)	8(5)	160(100)	9.318 (.025*)
	중학교	26(16.3)	54(33.7)	76(47.5)	4(2.5)	160(100)	
운영위원 참여경험	있다	16(15.2)	32(30.5)	53(50.5)	4(3.8)	105(100)	4.126 (.248)
	없다	20(9.3)	86(40)	101(47)	8(3.7)	215(100)	

* p<.05 ** p<.01 *** p<.001

4) 교육수요자의 청원사항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의 논의수준

학생 및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로부터의 청원사항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정도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논의가 ‘대체로 이뤄지고 있다’는 응답이 65.0%(206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대체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18.6%, ‘매우 잘 이뤄지고 있다’ 6.9% 순으로 나타났다. ‘청원사항이 없다’는 응답도 8.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4> 청원사항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논의정도에 대한 의견

구 분	빈도(명)	비율(%)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3	1.0
대체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59	18.6
대체로 이뤄지고 있다	206	65.0
매우 잘 이뤄지고 있다	22	6.9
청원사항이 없다	27	8.5
합 계	317	100.0

5)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서 가장 큰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운영위원의 전문성 결여’라는 응답이 44.8%(143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비(非)위원의 의사수렴과정 결여’ 15.1%, ‘학부모, 교사 등의 무관심’ 14.7%, ‘운영위원의 적극성 결여’ 12.6%, ‘위원 간 또는 학교와의 부조화’ 9.7% 순으로 나타났다.

<표 4-45>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문제점

구 분	빈도(명)	비율(%)
운영위원의 적극성 결여	40	12.6
운영위원의 전문성 결여	143	44.8
위원간 또는 학교와의 부조화	31	9.7
비(非)위원의 의사수렴과정 결여	48	15.1
학부모, 교사 등의 무관심	47	14.7
기 타	10	3.1
합 계	319	100.0

제3절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상의 평가에 대한 분석

다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위학교의 교육자치 활성화를 비롯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실시, 교육효과 제고, 학부모들의 학교발전에 적극 협력, 학교행정의 공개적 운영, 학교행정의 민주성 확립, 교육자와 학부모간 신뢰 확립 등의 영역으로 설문문항을 구성하여 질문하였다.

1. 각 영역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성과 평가

1) 단위학교 교육자치의 활성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단위학교 교육자치의 활성화에 어느 정도 성과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성과가 있다’는 응답이 57.5%(184명)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대체로 성과가 없다’ 35.6%, ‘전혀 성과가 없다’ 4.4%, ‘매우 성과가 있다’ 2.5%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이 단위학교 교육자치의 활성화에 성과가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60.0%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성과가 없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40.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6> 단위학교 교육자치 활성화 성과 평가

구 분	빈도(명)	비율(%)
전혀 성과가 없다	14	4.4
대체로 성과가 없다	114	35.6
대체로 성과가 있다	184	57.5
매우 성과가 있다	8	2.5
합 계	320	100.0

2)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실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실시에 어느 정도 성과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성과가 있다’는 응답

이 52.2%(167명)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대체로 성과가 없다’ 41.9%, ‘전혀 성과가 없다’ 5.0%, ‘매우 성과가 있다’ 0.9%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이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실시에 성과가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53.1%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성과가 없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46.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7>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실시 성과 평가

구 분	빈도(명)	비율(%)
전혀 성과가 없다	16	5.0
대체로 성과가 없다	134	41.9
대체로 성과가 있다	167	52.2
매우 성과가 있다	3	0.9
합 계	320	100.0

3) 교육효과 제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교육효과 제고의 성과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성과가 있다’는 응답이 48.8%(156명)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대체로 성과가 없다’ 44.3%, ‘전혀 성과가 없다’ 5.0%, ‘매우 성과가 있다’ 1.9%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이 교육효과 제고에 성과가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50.7%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성과가 없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49.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8> 교육효과 제고에 대한 성과 평가

구 분	빈도(명)	비율(%)
전혀 성과가 없다	16	5.0
대체로 성과가 없다	142	44.3
대체로 성과가 있다	156	48.8
매우 성과가 있다	6	1.9
합 계	320	100.0

4) 학부모들의 학교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학부모들의 학교발전에 적극적인 협력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성과가 있다’는 응답이 60.9%(195명)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대체로 성과가 없다’ 30.6%, ‘매우 성과가 있다’ 6.3%, ‘전혀 성과가 없다’ 2.2%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이 학부모들의 학교발전에 적극적인 협력에 성과가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67.2%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성과가 없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32.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9> 학부모들의 학교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 성과 평가

구 분	빈도(명)	비율(%)
전혀 성과가 없다	7	2.2
대체로 성과가 없다	98	30.6
대체로 성과가 있다	195	60.9
매우 성과가 있다	20	6.3
합 계	320	100.0

각 변수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이 학부모들의 학교발전에 적극적인 협력 성과 평가에 대한 응답분포에서는 성별, 학교유형별, 교직원 유형별, 운영위원 참여경험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학교행정의 공개적 운영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학교행정의 공개적 운영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성과가 있다’는 응답이 75.0%(240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매우 성과가 있다’ 16.9%, ‘대체로 성과가 없다’ 7.8%, ‘전혀 성과가 없다’ 0.3%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이 학교행정의 공개적 운영에 성과가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91.9%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성과가 없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8.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0> 학교행정의 공개적 운영에 대한 성과 평가

구 분	빈도(명)	비율(%)
전혀 성과가 없다	1	0.3
대체로 성과가 없다	25	7.8
대체로 성과가 있다	240	75.0
매우 성과가 있다	54	16.9
합 계	320	100.0

각 변수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이 학교행정의 공개적 운영에 대한 성과 평가 응답분포에서는 성별, 학교유형별, 운영위원 참여경험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 학교행정의 민주성 확립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학교행정의 민주성 확립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성과가 있다’는 응답이 73.1%(234명)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대체로 성과가 없다’ 13.5%, ‘매우 성과가 있다’ 13.1%, ‘전혀 성과가 없다’ 0.3%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이 학교행정의 민주성 확립에 대한 성과가 있다는 긍정적 응답이 86.2%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성과가 없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13.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1> 학교행정의 민주성 확립에 대한 성과 평가

구 분	빈도(명)	비율(%)
전혀 성과가 없다	1	0.3
대체로 성과가 없다	43	13.5
대체로 성과가 있다	234	73.1
매우 성과가 있다	42	13.1
합 계	320	100.0

7) 교육자와 학부모간 신뢰 확립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교육자와 학부모간 신뢰 확립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성과가 있다’는 응답이 66.9%(214명)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대체로 성과가 없다’ 24.1%, ‘매우 성과가 있다’ 7.5%, ‘전혀 성과가 없다’ 1.5%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이 교육자와 학부모간 신뢰 확립에 대한 성과가 있다는 긍정적 응답이 84.4%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성과가 없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25.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2> 교육자와 학부모간 신뢰 확립에 대한 성과 평가

구 분	빈도(명)	비율(%)
전혀 성과가 없다	5	1.5
대체로 성과가 없다	77	24.1
대체로 성과가 있다	214	66.9
매우 성과가 있다	24	7.5
합 계	320	100.0

각 변수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이 교육자와 학부모간 신뢰 확립에 대한 성과 평가 응답 분포에서는 성별, 학교 유형별, 운영위원 참여경험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지역 교육문제 해결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지역 교육문제 해결정도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공헌하고 있다’는 응답이 56.3%(180명)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대체로 공헌하지 못하고 있다’ 41.2%, ‘전혀 공헌하지 못하고 있다’ 1.9%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이 지역 교육문제 해결에 공헌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56.9%로 나타난 반면, 공헌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43.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3>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역 교육문제 해결정도에 대한 평가

구 분	빈도(명)	비율(%)
전혀 공헌하지 못하고 있다	6	1.9
대체로 공헌하지 못하고 있다	132	41.3
대체로 공헌하고 있다	180	56.3
크게 공헌하고 있다	2	0.6
합 계	320	100.0

9) 교내 학교관련 자생기관과의 유대관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학부모회, 어머니회 등 학교 자생기관과의 유대관계 형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형성되고 있다’는 응답이 71.6%(229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대체로 형성되고 있지 않다’ 17.8%, ‘매우 잘 형성되고 있다’ 9.4%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이 학교관련 자생기관과의 유대관계를 형성시키고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81.0%인 반면, 형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19.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4>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 자생기관간 유대관계 형성에 대한 평가

구 분	빈도(명)	비율(%)
전혀 형성되고 있지 않다	4	1.2
대체로 형성되고 있지 않다	57	17.8
대체로 형성되고 있다	229	71.6
매우 잘 형성되고 있다	30	9.4
합 계	320	100.0

10)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에 따른 문제점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운영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학교업무의 효율성 저하’라는 응답이 44.6%(14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다음은 ‘학교장의 소신 있는 학교경영 곤란’ 25.0%, ‘학교와 운영위원간의 갈등’ 12.0%, ‘학교간 격차 심화’ 10.8% 순으로 나타났다.

<표 4-55>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로 인한 문제점

구 분	빈도(명)	비율(%)
학교장의 소신있는 학교경영 곤란	79	25.0
학교간 격차 심화	34	10.8
학교업무의 효율성 저하	141	44.6
학교와 운영위원간 갈등	38	12.0
기 타	24	7.6
합 계	316	100.0

2.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정상 개선방안 검토

1) 학부모회 등 대표의 학교운영위원 겸임 필요성

학부모회, 어머니회 등의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겸임하는 것에 대한 질문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66.3%(212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21.3%, ‘매우 필요하다’ 10.9%, ‘전혀 필요하지 않다’ 1.5%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학부모

모회, 어머니회 등 대표의 학교운영위원 겸임에 대한 의견에서 부정적인 응답은 22.8%인 반면 긍정적인 응답은 77.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6> 학부모회 등의 대표의 운영위원 겸임 필요성

구 분	빈도(명)	비율(%)
전혀 필요하지 않다	5	1.5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68	21.3
대체로 필요하다	212	66.3
매우 필요하다	35	10.9
합 계	320	100.0

2) 지급 등의 심의안건에 대한 서면심의 방안 필요성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지급을 요하는 심의안건이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서면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63.5%(277명)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매우 필요하다’ 23.1%,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12.5%, ‘전혀 필요하지 않다’ 0.9%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지급을 요하는 심의안건 발생 시 서면심의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서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86.6%로 나타난 반면, 필요 없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13.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7> 지급 등의 심의안건에 대한 서면심의 방안 필요성

구 분	빈도(명)	비율(%)
전혀 필요하지 않다	3	0.9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40	12.5
대체로 필요하다	203	63.5
매우 필요하다	74	23.1
합 계	320	100.0

3)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참여 방안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학생을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현행 규정대로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51.6%(165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참관인 자격으로 발언할 수 있게 한다’ 33.4%, ‘회의에 참관만 시키고 발언권은 주지 않는다’ 9.4%, ‘규정을 개정하여 위원에 포함시켜야 한다’ 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58>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학생의 참여에 대한 의견

구분	빈도(명)	비율(%)
현행 규정대로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	165	51.6
회의에 참관만 시키고 발언권은 주지 않는다	30	9.4
참관인 자격으로 발언할 수 있게 한다	107	33.4
규정을 개정, 위원에 포함시켜야 한다	8	2.5
기 타	10	3.1
합 계	320	100.0

각 변수별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학생의 참여에 대한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학교 유형별($p<.01$)과 운영위원 참여경험별($p<.05$)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에서는 초등학교의 경우는 ‘회의에 참관만 시키고 발언권은 주지 않는다’는 응답비율과 ‘참관인 자격으로 발언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중학교의 경우는 ‘현행 규정대로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운영위원 참여경험별에서는 참여경험이 있는 집단의 경우에는 ‘현행 규정대로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는 응답비율과 ‘회의에 참관만 시키고 발언권은 주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참여경험이 없는 집단의 경우에는 ‘참관인 자격으로 발언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9>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학생의 참여에 대한 의견(분포차이)

(단위: 명(%))

구 분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학생의 참여에 대한 의견					전 체	x ² (p)
		현행규정 대로	회의참관, 발언권은 주지않음	참관인자 격,발언권 있음	위원에 포함시 킴	기 타		
성별	남	59(52.2)	10(8.8)	36(31.9)	5(4.4)	3(2.7)	113(100)	2.908 (.573)
	여	106(51.2)	20(9.7)	71(34.3)	3(1.4)	7(3.4)	207(100)	
학교 유형	초등학교	70(43.8)	21(13.1)	56(35)	4(2.5)	9(5.6)	160(100)	15.222 (.004**)
	중학교	95(59.4)	9(5.6)	51(31.9)	4(2.5)	1(0.6)	160(100)	
운영위원 참여경험	있다	62(59)	15(14.3)	24(22.9)	2(1.9)	2(1.9)	105(100)	11.916 (.018*)
	없다	103(47.9)	15(7)	83(38.6)	6(2.8)	8(3.7)	215(100)	

* p<.05 ** p<.01 *** p<.001

4)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지급규정 마련방안

학교운영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회의참석수당 등의 지급규정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43.4%(139명)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대체로 필요하다’ 40.0%, ‘전혀 필요하지 않다’ 13.1%, ‘매우 필요하다’ 3.5%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회의참석수당 지급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3.5%인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0>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 등 지급규정 마련 필요성

구 분	빈도(명)	비율(%)
전혀 필요하지 않다	42	13.1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139	43.4
대체로 필요하다	128	40.0
매우 필요하다	11	3.5
합 계	320	100.0

5) 행정실 일반직원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방안

학교 행정실 일반직원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66.6%(213명)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22.8%, ‘매우 필요하다’ 8.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5%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학교 행정실 일반직원의 참여가 필요 없다는 부정적 응답이 25.3%인 반면, 필요하다는 긍정적 응답은 74.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1> 행정실 일반직원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필요성

구 분	빈도(명)	비율(%)
전혀 필요하지 않다	8	2.5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73	22.8
대체로 필요하다	213	66.6
매우 필요하다	26	8.1
합 계	320	100.0

6)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우선 해결과제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교사 및 학부모의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인식 제고’라는 응답이 47.6%(152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운영위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확대’ 43.9%, ‘운영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등의 제도 마련’ 3.8%, ‘운영위원의 민주적 선출’ 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62>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우선적 해결과제

구 분	빈도(명)	비율(%)
학교운영위원의 민주적 선출	11	3.4
운영위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확대	140	43.9
교사·학부모의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인식 제고	152	47.6
운영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등의 제도 마련	12	3.8
기 타	4	1.3
합 계	319	100.0

제5장 결과분석 요약 및 개선방안

제1절 결과분석 요약

이 연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선출실태, 기능 및 운영실태, 운영상의 평가에 대하여 학교공동체 구성원들 중 교직원들의 인식이 어떠한지 또한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되어 향상화를 도모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조사를 위하여 제주 지역에 있는 초·중학교 350명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329부 중 불성실하게 답변한 9부를 제외한 32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를 얻었다.

1.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선출

1) 학교운영위원 정수와 구성비율

현행 학교운영위원의 정수는 학생수 200명 미만인 경우는 5~8명, 200명 이상 1,000명 미만 9~12명, 1,000명 이상 13~15명이다. 이에 대해 학교운영위원 정수의 적정성에 대한 설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6.9%가 '적당하다'고 응답하였고, 각 변수별 응답의 분포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운영위원 참여경험별 응답에서만 유의미한 분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40~50%, 교원위원 30~40%, 지역위원 10~30%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한 구성비율 적정성에 대한 응답 결과, 전체 응답자의 61.6%가 '적당하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학부모위원의 구성비율을 줄여야 한다' 25.9%로 나타났다.

2) 학교운영위원의 선출방법

학교운영위원 중 교원위원의 선출방법을 살펴보면,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한 선출방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선출방법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83.0%가 응답한 '정수 등록에

의한 무투표 당선에 의한 선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출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응답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76.3%가 '대체로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각 변수별 응답의 분포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과 운영위원 참여경험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당연직 교원위원에 학교장을 참여시키는 것에 대한 질문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90% 이상의 응답자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각 변수별로 응답의 분포를 살펴보면 성별, 운영위원 참여경험별 응답 분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위원의 선출방법을 살펴보면, 학부모총회에서 직접선거와 학부모 임원에 의한 간접선거 등 선거에 의한 선출방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응답자의 85.5%가 응답한 '정수 등록으로 무투표 당선에 의한 선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출방법 적절성에 대한 응답에서는 '대체로 적절하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7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각 변수별 응답의 분포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과 운영위원 참여경험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응답의 분포 차이가 나타났다.

학교운영위원 중 지역위원의 선출방법을 살펴보면, 직접선거에 의한 선출방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전체 응답자의 92.6%가 응답한 '정수 추천에 의한 선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출방법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응답 결과에서는 '대체로 적절하다'는 응답이 77.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변수별로 응답의 분포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과 운영위원 참여경험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자발적 입후보 등록 저조'가 64.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실태

1)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능의 필요성 인식

현재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현장 및 학칙의 제·개정을 비롯한 학교운영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기능을 갖고 있다. 각 사항별로 심의기능의 필요성에 대해 설문한 결과, '대체로 필요하다' 이상의 응답한 내용을 보면 학교현장 및 학칙의

제·개정 61.3%, 학교의 예산 및 결산 84.7%,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은 60%, 방과 후·방학 중의 교육 및 수련활동 68.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89.7%, 학교 운동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72.5%, 학교운영등과 관련된 청원사항 89.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77.5%, 교복 및 체육복 선정 77.8%,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83.7%, 학부모 및 일반인 대상의 평생프로그램 설치·운영 78.8%이다. 그러나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은 47.5%로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매우 적절하다’는 응답이 7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82.8%인 것으로 나타났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실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최 횟수에 대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적절하게 개최되고 있다’는 응답이 79.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성에 대한 응답 결과에서는 ‘대체로 민주적’이라는 응답이 74.3%로 가장 많았으며, 각 변수별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운영위원 참여경험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상정안건 심의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예결산 소위원회, 급식소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필요하다는 긍정적 응답은 51.9%로 나타났고, 각 변수별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학교유형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및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로부터의 청원사항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정도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논의가 대체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이 6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서 가장 큰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운영위원의 전문성 결여’라는 응답이 44.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상의 평가

1) 각 영역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성과 평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결과 성과 평가에 대한 설문에서 ‘대체로 성과가 있다’ 이상의 응답결과를 보면, 단위학교 교육자치의 활성화 60.0%, 학부모들의 학교발전에 적극 협력하는 부분 67.2%, 학교행정의 공개적 운영 91.9%, 학교행정의 민주성 확립 86.2%, 교육자와 학부모간 신뢰 확립 74.4%로 나타났으나,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실시, 교육효과 제고는 각각 53.1%, 50.7%로 낮게 평가되었다.

또한 지역 교육문제 해결정도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공헌하고 있다’는 응답이 56.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어머니회 등 학교 자생기관과의 유대관계 형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형성되고 있다’는 응답이 71.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운영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학교업무의 효율성 저하’가 44.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정상 개선방안 검토

학부모회, 어머니회 등의 대표가 학교운영위원으로 겸임하는 것에 대한 질문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응답은 77.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지급을 요하는 심의안건이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서면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응답이 86.6%로 나타났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학생을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현행 규정대로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51.6%로 나타났으나, 참관시키는 데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5.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별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학교 유형별과 운영위원 참여 경험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회의참석수당 등의 지급규정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필요하다’는 응답이

43.5%인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행정실 일반직원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부정적 응답이 25.3%인 반면 필요하다는 긍정적 응답은 74.7%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교사 및 학부모의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인식 제고’ 47.6%, 다음으로 ‘운영위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확대’ 43.9% 순으로 나타났다.



제2절 개선방안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선출실태, 기능 및 운영실태, 운영상의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 도조례 등을 같이 검토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선출 차원

학교운영위원 선출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과 기능, 활동상황, 선출관련 내용 등을 학교구성원과 전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필요 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로써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운영위원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갈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 선출은 사전에 구체적인 선출계획에 의하여 민주적 절차와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은 친절마인드로 운영위원들이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가족처럼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의 특성상 계속해서 정수미달이 되고 있다면 단위학교의 운영위원 정수를 한도 내에서 조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2)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및 운영실태 차원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중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에 대한 심의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구체적인 논의가 어렵고 형식적으로 될 뿐만 아니라 교사와 운영위원 간의 갈등이 야기될 소지도 있다. 교과용 도서나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전문가인 교과협의회 등의 교사그룹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교권침해의 소지가 될 수도 있으므로 심의보다는 자문, 보고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안건 심의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구성·운영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근래 급식소위원회 구성도 법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소위원회는 위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관심,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 학교운영위원회의 분권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학교의 예산·결산소위원회, 교육과정소위원회, 급식소위원회 등은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도록 한다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경우에도 소위원회 활동을 강화하여 수시로 소위원회 모임을 갖고 있으며 일정한 권한과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제16조에 소위원회 설치 의무조항을 두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상의 평가 차원

첫째, 학부모회, 어머니회 등의 대표가 운영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학교와 운영위원회, 그리고 자생기관 간의 정보공유, 친화 등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집단 간 갈등을 줄이고 학교공동체가 공동 목표를 함께 이루어감으로써 학교운영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좋은 학교 만들기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학부모위원 선출, 지역위원 추천 시 고려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무리가 따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 서면심의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학교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회의일자 결정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상당 기일이 소요되고 있다. 지급안건이 발생하거나 단순한 안건이 상정될 경우에는 운영위원장의 판단 하에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급하게 심의할 안건이 생길 경우 회의가 끝난 직후에는 잦은 소집을 우려하여 불가피하게 사후 심의를 받는 경우가 있다. 업무 처리의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단순 또는 지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에 교육수요자인 학생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미국, 독일,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 일정수의 학생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활동하도록 하여 학생들을 교육의 주체로서 존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을 보면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사항들이 학칙 제·개정을 비

못하여 방과 후 교육활동, 급식, 교복·체육복 선정, 수학여행·수련활동 등으로 많은 편이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회 소수 임원들을 참관하도록 하여 교육의 최종 수혜자로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학교운영에 반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넷째, 운영위원들의 회의참석 수당에 대한 보상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 물론 재정적인 보상이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인식 제고가 우선이겠으나 참여율이 저조하여 무투표당선으로 정수를 어렵게 채우는 상황으로 볼 때 활성화를 위하여 고려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근래 각종 위원회의 회의참석의 경우는 거의 수당지급이 되고 있어 형평성 고려 차원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최소한 운영위원회의 참석에 대한 출장비 지급부터 현실화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는 일반적으로 운영위원들의 연수 참석의 경우에 있어 출장비가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학교운영위원회에 일반직원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직원의 업무가 학교운영위원회 업무를 포함한 중요한 학교 행정사무 전반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조직은 크게 교원과 학생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직원은 그 직무 자체가 교원과 학생들의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는 위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무의 속성상 표면적으로 크게 부각되지 않는 특성에서 기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학교운영에 있어 일반직원의 행정적 전문성은 교원보다 더 높다고 볼 수 있으며, 학교의 집단적 의사결정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배제하는 것은 현실정정을 직시하지 못하는 교육정책의 수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직원들은 본연의 고유한 업무와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 사무까지 맡고 있어 이중적으로 업무 부담을 지고 있으면서도 학교의 합법적인 의사결정기구에의 참여에는 제외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일반직원은 물론 학교 고용원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시키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일반직원을 참여시켜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나아가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원화체제인 학교 현장에서도 교사그룹 중 75.2%가 이에 대하여 찬성하고 있다.

여섯째, 학교운영위원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인식제고와 더불어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가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학부모위원들은 학교의 예·결산,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하여 형식적인 심의가 이루어지거나 학교 측의 일방적인 주도에 끌려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제 심의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예·결산, 교육과정 운영, 학부모부담경비 관련 등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연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단위학교별로 운영위원회의시 연수 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선진학교 시찰, 사례발표회·교육 강연회 참석 등의 연수 기회를 마련하여 운영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연수 실시와 더불어 운영위원의 교육사랑의 열정 속에 적극적인 참여가 긍정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질 때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것이다.

일곱째,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하면 운영위원이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이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제재조항이 필요하다고 본다. 위반 시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위원자격을 상실토록 하는 의무조항을 둠으로써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운영위원회 임기개시는 3월말, 정기회는 4월중으로 정하고 있어, 한 달 정도의 기간에 임시회와 정기회를 두 번 열어야 하는 이중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 따라서 15일 이내에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실정에 따라 정기회 또는 임시회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실시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높여야 할 것이다.

제6장 결 론

학교운영위원회는 5.31 교육개혁안에서 초·중등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설치토록 제안되었고, 이는 단위학교가 자율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학교 운영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교원·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도입·시행하게 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시행되어 12년째를 맞이하는 동안 학교운영에 자율화와 민주화의 흐름을 가져왔고, 교육행정의 합리화와 투명화를 가져오게 된 계기를 마련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 주기도 하였으나, 아직도 학교현장에서는 참여의식 부족 및 전문성 결여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교공동체 구성원 중 학교 교직원들의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심 없이는 정상적인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연구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교직원의 인식을 조사·분석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으며,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선출 실태, 기능 및 운영실태, 운영상의 평가에 대한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조사를 위하여 제주 지역 초·중학교 35개교 교사, 보직교사, 일반직원 350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 분석에 사용한 설문지는 320부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구문제에 따라 기초통계량을 알아보고자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응답자의 성별, 학교유형별, 운영위원 참여경험별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인식의 분포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제곱(X^2)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간략히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선출에 있어서는 현행 학교운영위원의 정수 및 구성비율에 대해서 대부분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의 선출방법에는 적절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정수등록으로 무투표당선 선출이 되고 있어서 운영위원들의 입후보 의사가 저조한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있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항목별 심의 필요성에 대하여 대부분이 높은 긍정을 보이고 있었으나,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되었다. 또한 안건 심의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서의 큰 문제점으로는 ‘운영위원의 전문성 결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상의 평가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결과는 ‘종합적으로 성과가 있다’고 평가하였으나, 영역별로는 ‘교육효과 제고’ 항목에 낮게 평가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학교 업무의 효율성 저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부모회 등의 대표가 운영위원을 겸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을 요하는 안건에 대한 서면심의 제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참여에 대하여는 ‘현행 규정대로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가 51.6%로 나타나고 있었으나, 참관시키는 데에 대해서는 45.3%나 찬성하고 있어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직원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하였고, 회의참석 수당 등이 법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다’가 56.5%로 나타났으나, 43.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는 ‘교사 및 학부모의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인식 제고’가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운영위원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확대’ 순으로 나타났다.

위의 설문조사 결과 교직원들의 인식과 관련 도 조례 등을 바탕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과 선출 등 관련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필요시 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참여를 증대시켜야 한다.

둘째,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에 대한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전문가인 교과협의회 등의 교사그룹에 맡기도록 하는 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의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학교의 예산·결산 소위원회, 교육과정소위원회, 급식소위원회 등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넷째, 학부모회, 어머니회 등의 대표가 운영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지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 서면심의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학교운영위원회에 일반직원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수요자인 학생의 참여를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 또한 운영위원들의 회의참석에 대한 보상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야 한다.

여섯째, 학교운영위원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들의 교육사랑의 열정과 적극적 참여로써 인식을 제고하는 것과 더불어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가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학교운영위원이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하였을 경우 위원자격을 상실토록 하는 의무조항을 두도록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운영위원의 임기 개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에 대하여도 학교실정에 따라 정기회 또는 임시회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논의한 사항들에 대한 연구와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하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운영위원들의 학교 사랑과 교육에 대한 열정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이해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사고를 전환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문제점을 해결해 나아간다면 단위학교 실정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및 간행물

- 교육개혁위원회(1995).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 제2차 대통령 보고서」
- 교육부(1996).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실제」, 서울 : 을지문화사.
- 교육부(2000).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Ⅱ」, 서울 : 사회교육문화사.
- 김성렬(1995).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과제와 전망」, 교육월보.
- 김태완(1989). 「교육자치제 종합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14」,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 협의회(1989). 「교육 백서」 서울 : 도서출판 풀빛.
- 박종렬(1995). 「교육행정의 발전과 전망」, 서울 : 한국교육행정학회.
- 박종필(2004). 「학교단위 책임경영제 이론과 실제」, 서울 : 도서출판 원미사.
- 유현숙(1995). 「학교단위 책임경영제, 그 성공전략은 무엇인가」, 교육월보 제159호 3월호, 교육부.
- 제주도교육청(2005). 「알기쉬운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07). 「교육자치범규집」, 제주 : 시민당인쇄사.
- 주삼환(1992). 「새로운 세기의 교장과 장학」, 서울 : 성원사.
- 진동섭(1995).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장의 역할과 자질」, 교육월보 제159호 3월호, 교육부.
- 최희선(1995). 「학교단위 책임경영제, 왜 필요한가」, 교육월보 제159호 3월호, 교육부.

2. 논문

- 곽문복(2004).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개선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영희(1999). “교육자치제도상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선방안”,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영주(1998). “교육자치실현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은(2005).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인식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각(2000).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중등학교 교원들의 인식조사 연구”,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수(2004).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병삼(2004).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와 운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모(2003).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열(2001). “학교교육의 제도적 조건으로서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도입과 정착, 활성화”, 「교육인류학연구」 4(2).
- 김수현(1997).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실태분석”,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마영숙(2002). “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분석”,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승중(2006).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의 참여활성화 인식 비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종렬(1996). “중등학교의 학교단위책임경영을 위한 학교평가기준의 개발”, 「교육행정학연구」 제14권 2호.
- 신태균(2000).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개선 방안”,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기복(2001). “학교운영위원회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행정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염철인(1996).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인식분석”,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승현(2003). “중등학교 교사의 학교운영위원회 인식도 분석”,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임규(1998).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교원위원들의 견해 분석”,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강식(2006).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성과 분석 및 효과적 운영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중철(2001).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갈등의 유형화 탐색”, 논문집 3.
- 정태범(1995). “학교장 중심 학교경영 모형 : 교육진흥, 제7권 제3호”,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7.
- 정현웅(1998).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분석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수연(1996).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영해(2001).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C. Dimmock(1993), *School-based Management and School Effective*(New York : Routledge)
- B.J Caldwell, and J.M Spinks(1988), *The self-managing school*(London : The Falmer press).

Abstract

Reform measures for the school steering committee to realize school autonomy

- Based on opinions of the school personnel at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in cheju -

Graduate school of Administration
cheju University
Major of General Administration
Yang Young Soon

The research is designed to help reinvigorate the school steering committee by studying and analyzing the opinions of school personnel, part of the school communit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school steering committee, which is twelve years old. The constitution and selection process of the steering committee and its functions and managerial practices were created as items for the research in order to achieve its intended goal. The survey was conducted on three hundred fifty teachers, teachers in charge and other staff at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in cheju. As for questionnaires used for the final analysis, 320 out of the 329 collected were made use of, excluding 9 copies in which respondents gave insincere answers. To gather statistics of the data, SPSS WIN 12.0 program was applied to the analysis of frequency and chi square, X^2 .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findings obtained after the results of the survey were analyzed: 1. In the aspect of the lineup and selection of the school steering committee, its members are reluctant to stand as candidates since they are chosen without a vote if the necessary quorum is filled, which poses a serious problem.

2. With regard to the functions and management of the committee, the selection of textbooks and teaching material was rated low among the items subject to deliberation of the committee. Most of its members agreed with the need for an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subcommittee to ensure the efficiency of the deliberation on matters. In connection with the problems in running the committee, the lack of the expertise of its members stood high above the others.

3. With respect to the managerial evaluation of the committee, the item of the raise of educational effectiveness was rated low. For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steering committee, the efficiency of school affairs showed a sharp fall. Most of the respondents were in favor of a representative of a parents' association holding the position of a member of the steering committee. They shared the view with one another that it is necessary to institute a documentary examination for pressing matters. As for the students' participation in the school steering committee, mor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should be prohibited from taking part in the committee as in the regulations in force, but 45.3 percent of them approved of letting students observe the committee, which deserves special consideration. The majority of the respondents were also for the participation of non-teaching staff in the steering committee. Even though more respondents said that there is no need for the attendance allowance to be legally clarified, whether or not to pay the allowance should be given careful consideration as 43.4 percent of them said yes for the need. Among the matters to be addressed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the steering committee come an increase of recognition of the school steering committee, followed by an expansion of in-service training programs to foster the professionalism of its members.

Here are reform measures to guide the school steering committee into the right path based on the opinions of teachers and other staff shown in the above analysis and the ordinance of the local government relevant to the subject: 1. Furthering the participation by keeping people informed of the function and selection process of the committee and getting them much interested in it.

2. Making a legal study intended to entrust such a teachers' group as the Curriculum Council, made up of educationist with the deliberation on the selection of textbooks and teaching material.

3. Revising regulations so as to make obligatory the establishment of a sub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a Curriculum subcommittee and a subcommittee on Meal service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deliberation on the matters of the committee.

4. Making plans for making it possible for a delegate of a parents' association to hold the post of a committee member, and creating a system under which a documentary examination can be made on urgent matters.

5. Allowing non-teaching staff and students to participate in the school steering committee, and seeking ways to pay attendants an allowance by putting it in statutory form.

6. Increasing the recognition of the steering committee and making in-service training programs to cultivate the expertise in a concrete and in-depth fashion, so that the school steering committee can take root in a desirable course.

Lastly, there should be a revision of regulations in which a mandatory clause is placed saying that if a committee member turns out to be connected in business dealings with the competent school for commercial interests, he or she can be deprived of membership upon the decision of the committee. As for the first conference to be conven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term in addition to that, regulations should be amended in order that it can be held, classified into a regular session or an extra session depending on the actual circumstances of each school.

제주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개선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우리 교육발전에 헌신하시는 선생님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며, 본 연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설문은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선생님의 귀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하였으며, 선생님께서 평소 느끼시던 바를 그대로 응답해 주시면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설문의 결과는 무기명으로 통계 처리되며 응답해 주신 내용은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각 설문에 정성을 다하여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무궁한 풍요와 행복을 기원합니다.

2007년 4월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일반행정 전공 양 영 순 올림
(문의전화 : 018-692-5556)

▣ 다음은 귀하의 일반사항에 관한 설문입니다. 해당란에 V표를 해 주십시오.

1. 성 별 : ① 남() ② 여()
2. 학교구분 :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3. 교직원 구분 : ① 일반직() ② 교사() ③ 보직교사()
4. 귀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I.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선출실태에 관한 사항입니다.

1. 현행 학교운영위원 정수는 학생수 200명 미만 5-8명, 200명 이상 1,000명 미만 9-12명, 1,000명 이상 13-15명입니다. 귀교 학교운영위원 정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적은 편이다 ② 적당하다 ③ 많은 편이다 ④ 잘 모르겠다

2. 현행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비율은 학부모위원 40~50%, 교원위원 30~40%, 지역위원 10~30%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구성비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현행의 구성비율이 적당하다
- ② 학부모위원의 구성비율을 줄여야 한다
- ③ 교원위원의 구성비율을 줄여야 한다
- ④ 지역위원의 구성비율을 줄여야 한다
- ⑤ 기타(적어주십시오 : _____)

3. 귀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서 분야별 운영위원 선출방법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해 주십시오.

위원구분	적절성(민주성)			
	① 매우 부적절하다	② 대체로 부적절하다	③ 대체로 적절하다	④ 매우 적절하다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4. 귀교 운영위원회의 교원위원은 어떤 방법으로 선출하였습니까? ()

- ①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선거
- ② 정수 등록으로 무투표당선 선출
- ③ 등록자가 없어 추천에 의하여 선출
- ④ 일부 등록자는 무투표당선, 미달인원은 추천에 의하여 선출
- ⑤ 기타(적어주십시오 : _____)

5. 귀교 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은 어떤 방법으로 선출하였습니까? ()

- ① 학부모총회에서 직접선거
- ② 학부모임원(대의원 구성)에 의한 간접선거
- ③ 정수 등록으로 무투표당선 선출
- ④ 일부 등록자는 무투표당선, 미달인원은 추천에 의한 선출
- ⑤ 기타(적어주십시오 : _____)

6. 귀교 운영위원회의 지역위원은 어떤 방법으로 선출하였습니까? ()

- ① 추천대상자가 정수를 초과하여 직접선거
- ② 정수 추천에 의한 선출
- ③ 추천대상자가 정수 미달로 2차 추천 등으로 선출
- ④ 기타(적어주십시오 :)

7.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에 학교장의 참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③ 대체로 동의한다 ④ 매우 동의한다

8. 교원위원 · 학부모위원의 선출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선출에 대한 홍보 미흡 ② 자발적 입후보 등록 저조
- ③ 민주적 선출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 ④ 직접선거의 어려움
- ⑤기타(적어주십시오 :)

II.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입니다

9.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심의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하여 필요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V해 주십시오.

내 용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③ 대체로 필요하다	④ 매우 필요하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개정				
2) 학교의 예산 및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				
5) 방과 후 · 방학 중의 교육 및 수련활동				
6)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7) 학교운동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내 용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③ 대체로 필요하다	④ 매우 필요하다
8) 학부모·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청원사항				
9)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10)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11) 수학여행, 학생수련, 야영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12) 학부모 및 일반인 대상의 평생프로그램 설치·운영				

10.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적절하지 않다 ② 대체로 적절하지 않다
 ③ 대체로 적절하다 ④ 매우 적절하다

11.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과다하게 개최되고 있다 ② 적절하게 개최되고 있다
 ③ 필요한 만큼 개최되지 않고 있다 ④ 잘 모르겠다

12.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아주 비민주적이다 ② 대체로 비민주적이다
 ③ 대체로 민주적이다 ④ 매우 민주적이다

13. 학교운영위원회 안전 심의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예결산소위원회, 급식소위원회 등)를 구성·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③ 대체로 필요하다 ④ 매우 필요하다

14. 학생 및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로부터의 청원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 ② 대체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
- ③ 대체로 이루어지고 있다 ④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 ⑤ 청원사항이 없다

15.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운영위원의 적극성 결여 ② 운영위원의 전문성 결여
- ③ 위원간 또는 학교와의 부조화 ④ 비(非)위원의 의사수렴과정 결여
- ⑤ 학부모, 교사 등의 무관심
- ⑥ 기타(적어주십시오 : _____)

Ⅲ.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상의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16.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항목의 성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해 주십시오.

내 용	① 전혀 성과가 없다	② 대체로 성과가 없다	③ 대체로 성과가 있다	④ 매우 성과가 있다
1) 단위학교 교육자치의 활성화				
2)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실시				
3) 교육효과 제고				
4) 학부모들의 학교발전에 적극 협력				
5) 학교행정의 공개적 운영				
6) 학교행정의 민주성 확립				
7) 교육자와 학부모 간 신뢰 확립				

17. 지금까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

- ① 전혀 성과가 없는 편이다 ② 대체로 성과가 없는 편이다
- ③ 대체로 성과가 있는 편이다 ④ 매우 성과가 높은 편이다

18. 학교운영위원회가 운영됨으로써 지역의 교육문제 해결에 공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공헌하지 못하고 있다 ② 대체로 공헌하지 못하고 있다
 ③ 대체로 공헌하고 있다 ④ 크게 공헌하고 있다
19.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자생기관(학부모회, 어머니회 등)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20.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나타나는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학교장의 소신있는 학교경영 곤란 ② 학교간의 격차 심화
 ③ 학교업무의 효율성 저하 ④ 학교와 운영위원과의 갈등
 ⑤ 기타(적어주십시오 : _____)
21. 바람직한 학교운영을 위하여 학부모회(어머니회) 등의 대표가 운영위원을 겸임하는 것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③ 대체로 필요하다 ④ 매우 필요하다
22. 지급을 요하는 심의안건이 있는 경우 상황(찾은 회의소집 등)에 따라 서면심의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③ 대체로 필요하다 ④ 매우 필요하다
23.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의 참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현행 규정대로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
 ② 회의에 참관만 시키고 발언권은 주지 않는다
 ③ 참석하여 참관인 자격으로 발언할 수 있게 한다

- ④ 규정을 개정하여 위원에 포함시켜야 한다
- ⑤ 기타(적어주십시오 : _____)

24. 학교운영위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회의참석수당 등이 법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 ③ 대체로 필요하다 ④ 매우 필요하다

25. 학교 행정실 일반직원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 ③ 대체로 필요하다 ④ 매우 필요하다

26.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학교운영위원의 민주적인 선출
- ② 운영위원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확대
- ③ 교사 및 학부모의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인식 제고
- ④ 운영위원회에 대한 수당 지급 등의 제도마련
- ⑤ 기타(적어주십시오 : _____)

●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선점이나 조언이 있으면 기재해 주십시오.

-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